

# 프랑스의 政治改革關聯 法制

- 政治資金透明化法 · 選舉費用規制法 · 腐敗防止法 -

1993. 10.

연구자 : 박영도(수석연구원)

김인재(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 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 目 次

I. 머리말	1
II. 政治改革關聯 法制的 成立背景	4
1. 1988년의 「政治資金透明化組織法律」과 「政治資金透明化法律」의 成立背景	4
2. 1990년의 「選舉費用制限 및 政治資金公開法」 및 「大統領 및 下院議員의 選舉運動資金組織法律」의 成立背景	8
3. 1993년의 「腐敗防止 및 經濟生活과 公的節次の 透明化法」의 成立背景	9
III. 政治改革關聯 法制的 主要內容	11
1. 政治改革關聯 法制的 基本的 特徵	11
2. 政治改革關聯 法制的 主要內容	12
IV. 結 語	23
〈附錄 - 1〉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組織法律	25
〈附錄 - 2〉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法律	30
〈附錄 - 3〉 選舉費用制限 및 政治活動資金公開에 관한 法律	39
〈附錄 - 4〉 共和國大統領 및 下院議員의 選舉運動資金에 관한 組織法律	52
〈附錄 - 5〉 腐敗防止 및 經濟生活과 公的節次の 透明化에 관한 法律	53



# 프랑스의 政治改革關聯 法制

- 政治資金透明化法·選舉費用規制法·腐敗防止法 -

## I. 머리말

1993년 3월 28일에 실시된 프랑스總選에서 右派政黨聯合體인 프랑스동맹(UFP)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프랑스政局은 지난 1986년 부터 1988년에 이어 두번째로 左右同居政府가 출범하였다. 1981년의 사회당집권으로 시작된 프랑스좌파내각이 참패한 것은 프랑스 政治理念의 역사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수아 미테랑 大統領이 이끄는 사회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 失業問題의 악화 등 여러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1981년 사회당정권탄생이후에 左右兩陣營에서 政治스캔들이 급증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도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총선거직전에 발각된 베레고부아 首相의 뇌물수수혐의, 에마뉼엘리 國會議長의 불법정치자금조성, 혈액수혈사건과 관련한 파비우스 社會黨黨首의 연루혐의 등 일련의 정치적 추문이 계속 폭로되어 집권사회당의 도덕성에 대한 國民의 不信感을 더욱 조장한 것이 총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던 것이다.<sup>1)</sup>

어떻든 총선거에 있어서 社會黨의 패배에 의해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한

1) 1993年 3월에 실시된 프랑스 總選舉의 분석에 관한 상세한 것은 張世蕪, 「1993年 總選과 프랑스政局의 向方」, 立法資料分析 제15호, 1993.6., 1~27面 參照. 또한 總選以前의 정치상황에 관한 것은 中村五雄, 「ミツテラン大統領第二任期半ばの政治狀況」, レファレンス 第493號, 1992.2., 49~72面 參照.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政治不信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불신을 초래한 초래한 최대의 원인은 만성화된 政界스캔들이다. 특히 1987년에 발각된 일련의 정치스캔들사건은 프랑스정계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프랑스政界는 이른바 정치자금규제문제를 필두로 하는 政治改革作業에 착수하게 되었다. 우선 1987년 10월 13일 고급보석점의 倒産을 둘러싸고 법무장관이 위법한 高利貸付를 행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이어 동월 27일에는 全國通信自由委員會(CNCL)의 위원 1인이 라디오방송의 인가와 관련한 汚職容疑者로 고소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동년 11월초에 발각된 튀셀社 사건(이란에 무기를 밀수한 프랑스무기상인 튀셀社가 밀수목인의 대가 사회당정부에 거액의 金品을 지불한 사건)은 프랑스정가에 커다란 파문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미테랑 大統領은 시라크內閣에 대해 정치정화를 위한 정치자금의 규제와 정치가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988년 3월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1988년 3월 11일의 組織法律 제88-226호(Loi organique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및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1988년 3월 11일의 法律 제88-227호(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단기간에 성립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1988년 6월에 행해진 總選舉는 위 법률의 제도상의 불비를 노출하는 단적인 계기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89년 2월에 지방공공단체의 公共事業과 관련한 오직헌금사건인 SORMAE사건이 발각되어 여야당의 市長을 포함한 다수정치가가 기소되었다. 이에 사회당정부는 다시 상기법률의 修正法으로서 1990년에 「選舉費用制限 및 政治活動資金公開에

관한 1990년 1월 15일의 法律제90-55호(Loi n° 90-55 du 15 janvier 1990 relative à la limitation des dépenses électorales et à la clarification du financement des activités politiques), 및 「共和國大統領 및 下院議員의 選舉運動資金에 관한 1990년 5월 10일의 組織法律 제90-383호(Loi organique n° 90-383 du 10 mai 1990 relative au financement en vue de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e celle des députés)」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일련의 정치자금규제입법도 스캔들의 확대를 저지할 수가 없었다. 특히 1992년 1월 지난 1988년 미테랑 大統領 재선운동당시 사회당이 정치자금조달을 위해 내세웠던 위르바라는 建築用役會社가 정부의 특혜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짜 領收證 등을 작성하여 상당액의 금액을 사회당 정치자금으로 빼돌린 「위르바 事件」이 발각되어, 사회당관계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의원과 정치가 및 경제인이 조사를 받거나 체포되는 腐敗스캔들이 폭로되면서 프랑스정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이 사건으로 집권사회당은 동년 3월 22일 실시된 地方選舉에서 그 지지율이 지난 2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말았다. 이 선거결과로 미테랑 大統領은 크레송 首相을 퇴진시키고 새 수상을 임명하였다. 한편 1992년 4월 수상에 취임한 베르고부아는 부패의 근절을 목표로 새로운 法規制의 실시를 공약하여 4월 말에는 腐敗防止委員會를 설치, 그 구체적인 부패방지책의 검토에 착수하였다. 동 위원회가 입안한 부패방지법안은 1992년 12월 19일에 兩院의 합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하여, 1993년 1월 29일 「腐敗防止 및 經濟活動과 公的節次의 透明化에 관한 1993년 1월 29일의 법률 제93-122호(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f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로 제

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政治改革作業에 다  
소나마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프랑스의 정치부패척결을 위한 政治改  
革法制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II. 政治改革關聯 法制의 成立背景<sup>2)</sup>

### 1. 1988년의 「政治資金透明化組織法律」과 「政治資金透明化法律」의 成立背景

프랑스는 1980년대까지 정치자금의 문제에 비교적 무관심하였다고 한다.  
政黨은 자유로이 결성·운영되고, 政黨의 資金이 어디에서 조달되고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일체 공표되지 않았다. 選舉運動費用에 대하여도 종래의 법률  
에서는 대통령선거·하원의원선거·지방의회선거에서 유효투표의 5%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하여 選舉公報 등의 용지대금·인쇄비용을 상환하거나,  
대통령선거의 경우에 한하여 5%이상의 得票者에게 선거운동비용의 국고보조  
로 25萬프랑을 지급하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또한 80년대 후반 美國을 비롯한 각국에서 정치인의 재산공개 내지 재산신  
고가 잇달아 制度化되었지만 프랑스는 이에 동조하지 않았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정치자금의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70년대 이후 선거운동에 텔레비전이 활용되면서 候補者의 선  
거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각 후보자 및 政黨의 관계자들로부터도 選

---

2) 각 法律의 입법연혁은 外國の立法, 第27卷4號(1988), 175~176面 ; 同,  
第29卷4號(1990), 255~256面 및 JURIST, No.1022(1993.5), 109面  
등을 참조.



舉資金에 대한 規制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동시에 정치자금 실태의 불투명은 국민에게 政治人은 부패하였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政治資金의 實態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政治資金의 淨化(透明化)를 요구하는 여론을 배경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법안이 자주 의회에 제출되었다. 政黨에 國庫補助금을 지급하고 그 댓가로 어떠한 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법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78년의 社會黨法案과 1979년에 당시 발루아 內閣이 제출한 정부법안을 들 수 있다. 이 중 政府法案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도입과 보조금의 사용상황을 감독하는 委員會의 설치를 정하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었지만, 社會黨法案은 선거운동비용의 제한·정당에의 기부제한·정당의 수입지출의 공개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었다. 1987년 3월에는 공화당으로부터 政黨補助 및 선거비용보조를 실시하고, 그 댓가로 政黨收支의 감독 및 선거운동비용의 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法案도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어느 것도 審議되지 않았다.

한편 정치인의 財産公開에 대하여도 이미 左翼政黨을 중심으로 제도화가 검토되고 있었으며 법안도 몇 번 제출되었다. 社會黨은 1981년 1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국회의원·각료의 취임시 및 퇴임시에의 재산신고 제도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政黨活動의 自由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당국고보조제도에 반대하고 있던 공산당도 1980년에 정당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에 관계된 자는 그 財産 및 收入을 회계검사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政黨國庫補助法案과 마찬가지로 이들 재산공개법안도 심의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987년 가을 잇달아 발각된 정치인의 汚職·스캔들사건은 프

랑스정계에 충격을 주어 정치자금규제문제에 관한 종래의 입장을 일변시켰다. 특히 앞서 살펴본 튀셀社事件은 프랑스정계에 커다란 파문을 초래하였으며, 1988년의 정치자금투명화법제확립의 直接的 契機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미테랑 大統領은 시라크內閣에 대하여 政治資金의 規制 및 政治人의 財産公開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시라크內閣은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각당 수뇌부와 법안내용에 대한 協議를 개시하여 1988년 1월 13일에 「政治資金透明化法律案」을 각의결정하였다.

議會에 제출된 법률안은 하원(國民議會 : l'assemblée nationale)에서는 선거운동비용의 上限의 引上 등이 수정되어 1988년 2월 4일에 통과되고, 상원(元老院 : le Sénat)에서는 재산신고제도가 대폭 수정되어 2월 7일에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수정안 중에서 정부는 上院의 수정안에 타협하는 형식으로 법안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수정하였으며,<sup>3)</sup> 修正된 法案은 2월 3일과 2월 5일에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중 조직법률안은 憲法委員會(le Conseil constitutionnel)의 합헌성 심사를 거친 후에 一般法律案과 함께 3월 11일에 공포되었다.<sup>4)</sup>

政治資金透明化法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1988년 3월 11일의 組織法律 제88-226호」<sup>5)</sup>와 「同 (一般)法律 제88-227

- 
- 3) 프랑스에서는 上下兩院에서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될 때까지 몇번씩 上下兩院을 왕복하든가, 政府의 주도에 의하여 상하양원과 정부간에 설치된 委員會에서 협의하여 妥協案을 만들어내야 한다(프랑스憲法 제45조 참조).
  - 4) 社會黨은 당초안에 대하여는 棄權, 修正案에 대하여는 反對하였으며, 共產黨은 모두 반대하였다.
  - 5) 최초의 名稱은 「1962년 大統領選舉法 및 選舉法典을 개정하는 組織法律案」이었으나 나중에 議會의 심의과정에서 동 제목으로 개칭되었다.

호」의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규제사항의 相異 때문이 아니라, 헌법 제 6조에서 大統領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률보다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組織法律(loi organique)<sup>6)</sup>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大統領에 관한 규정(이를 준용하는 國會議員에 관한 규정)은 組織法律에 의하고, 國會議員에 관한 나머지 규정, 閣僚 및 기타 政治人(주의회의장·해외영토의장 등)에 관한 규정이나 政黨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률에 규정되고 있다. 한편 同 法案의 제출이유로서 다음의 3개의 목적을 열거하고 있다.

- ① 政治人の 財産狀態變化의 평가를 체계화한다 : 이를 통하여 정치인은 공직을 이용하여 財産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다.
- ② 大統領 및 下院議員의 선거에서 각후보자의 평등화를 도모한다 : 최근의 선거운동비용의 증대경향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支出의 上限額을 설정하고, 후보자에게 會計報告를 의무화한다. 寄附金額을 제한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후보자의 政治的 獨立을 확보한다.
- ③ 政黨에 國庫補助金을 지급하고 결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 의회정치에 불가결한 政黨의 역할을 인정하고 政黨國庫補助制度를 창설한다.

그리고 政治資金透明化法은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① 정치인의 財産申告에 관한 규정(L.O. 제5조·제6조, 選舉法典 L.O. 제135-1조·제135-2조를 신설하고, 이를 준용하는 大統領選舉法 改正), ② 選舉資金의 규제와 국고에 의한 비용상환에 관한 규정(L.O. 제7조·제8조, 選舉法典 L.O. 제163-1조~제

---

6) 「組織法律」이란 일반법률에 비하여 憲法에 가까운 성질을 갖는 법률로서 憲法委員會의 합헌성 심사 의무와 같이 一般法律보다 엄격하게 취급된다. 헌법위원회에서 合憲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大統領은 이를 공포(promulgation)할 수 없다. 組織法律은 특히 選舉法典(Le Code électoral) 가운데 많이 있는데, 一般法律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조문의 冒頭에 조직법률은 「LO」 또는 「L.O.」, 一般法律은 「L」 또는 「L.」을 부기하는 것이 通例이다.

163-4조 신설, L.제167조 改正), ③政黨에 대한 國庫補助 등에 관한 규정 (L.제7조~제11조)등을 두었다.

## 2. 1990년의 「選舉費用制限 및 政治資金公開法」 및 「大統領 및 下院議員의 選舉運動資金組織法律」의 成立背景

위와 같은 1988년 3월 11일의 政治資金透明化法은 단기간에 급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①선거운동비용의 收入과 支出의 정의가 명확히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 ②寄附가 아닌 차입금의 형식을 취하거나 인접한 벨기에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違反에 대한 罰則 내지 制裁가 미비하였다는 점 등이 문제되었다. 그 결과 1988년 6월에 행해진 總選舉는 위 법률들의 제도상 불비를 노출하는 단적인 契機가 되었다.

특히 1989년 2월에 일어난 SORMAE社事件을 통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地方을 포함하지 않으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社會黨政府는 「選舉費用制限 및 政治資金淨化에 관한 法律案」을 1989년 6월 20일 각의에서 정부안으로 채택하였다.<sup>7)</sup> 이 법률안은 「共和國大統領 및 下院議員選舉의 選舉運動資金에 관한 組織法律」과 함께 1989년 가을 회기에 제출되어, 상원과 하원의 수정을 거친뒤 최종적으로 1989년 12월 22일에 下院에서 채택되었다. 그 후 1990년 1월 11일의 憲法委員會의 결정에 의하여 동 법률 가운데 포함된 赦免條項의 일부 어

7) 특히 政府案은 1989년 6월 15일 이전의 위반자는 赦免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여 SORMAE社事件의 관계자를 구제하려 하였다. 이 조항은 輿論과 各黨의 반대에 직면하였지만 결국 관철되었다.

구와 정당·정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중 得票數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부분의 수급자격을 유효투표 5%이상을 획득한 政黨·政治團體에 한정한다는 규정이 違憲으로 판단되어 이들 부분을 삭제한 法律案이 확정되고, 1990년 1월 15일에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또 「共和國大統領 및 下院議員選舉의 選舉運動資金에 관한 組織法律」도 헌법위원회의 심사에서 違憲의 규정이 지적되고 또 이들 違憲部分이 법률전체와 불가분이었기 때문에 1990년 5월 10일에 이르러 大統領이 공포하였다.

「選舉費用制限 및 政治資金公開法」과 「大統領 및 下院議員選舉의 選舉運動資金에 관한 組織法律」중, 전자에서는 대통령선거법·선거법전 및 1988년의 정치자금투명화법의 개정형식으로 ①選舉運動費用的 規制(제1조), ②政治資金의 規制 및 국고보조(제10조~제13조) 등을 규정하였다. 동법은 1988년法에 비하여 선거운동비용의 規制對象이 되는 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치자금 및 선거운동비용의 모집은 政治資金團體와 選舉資金團體 또는 財政代理人의 중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운동비용의 상한액 설정 및 정치자금 내지 선거운동비용의 寄附額 制限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신설하였다. 다만, 1989년 6월 15일 이전에 범한 違法行爲로서의 선거운동비용 및 정치자금의 조달에 관련하여 행해진 犯罪에 대하여 이를 사면하는 규정을 두었다(제19조 참조).

한편 組織法律에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상한액 설정(L.O. 제1조~제5조)과 國庫償還 및 하원의원선거에서도 회계보고서의 불비의 경우에 被選舉權의 정지(L.O. 제6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 3. 1993년의 「腐敗防止 및 經濟生活과 公的節次의 透明化法」의 成立背景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스캔들의 다발을 계기로 1988년 3월에 政治資金透明化法이 제정되었고 이어 1990년에는 政治資金 및 選舉資金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정치자금규제입법도 스캔들의 확대를 막을 수 없었다. 또한 1990년의 改正法에 도입된 「赦免條項(1989년 6월 15일이전의 정치자금규제위반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서 이에 의해 다수의 정치가가 처벌을 면하였다)」은 다수 국민의 政治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조장하였다. 특히 1992년 1월에 발생한 사회당 관계자를 중심으로 많은 의원·지방정치인이 연루된 「가짜영수증사건(위르바 事件)」으로 인하여 동년 3월 22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社會黨의 지지율이 지난 2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말았으며, 또한 1992년 4월의 총선거에서도 참패를 가져다 주었다.

크레송수상의 후임으로 1992년 4월 수상에 취임한 베레고부아는 부패의 근절을 목표로 새로운 법규제의 실시를 공약하였으며, 4월말에는 腐敗防止委員會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부패방지책의 검토에 착수하였다. 동 위원회는 7월에 공표한 보고서에서 단순히 정치자금규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贈賄側의 民間企業도 포함한 사회전체의 부패구조의 개혁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거래 금액이 큰 建設業界나 가격설정이 애매한 많은 廣告業界 등에서는 경쟁원리의 철저와 거래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또 地方自治團體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공공사업의 입찰에서 계약체결까지의 전과정의 투명화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부패방지법을 입안하여 가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9월 9일의 각의에서는 미테랑 大統領이 기업현금의 전면금지를 주장

하여 주목되었으나, 결국 全面禁止에는 이르지 못하고 정당수입에 대한 기업헌금의 비율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그 후 동 법안은 1992년 12월 19일에 兩院의 합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하고, 그 후에 헌법위원회의 합헌성심사에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1993년 1월 29일 「腐敗防止 및 經濟生活과 公的節次의 透明化에 관한 法律」로 공포되었다. 베레고부아首相은 이 부패방지법의 성립에 의해 당초의 公約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부패방지법에서는 ①腐敗防止本部를 설치하고(제1조~제6조), ②선거법전·정치자금투명화법 및 선거운동비용규제 및 정치자금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정치자금·선거자금의 規制強化(제7조~제17조), ③상업 및 가내공업기본법·건설주택법전·시읍면법 기타 관련법의 개정형식으로 經濟活動의 透明性確保 및 公共事業契約의 적정화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Ⅲ. 政治改革關聯 法制的 主要內容

#### 1. 政治改革關聯 法制的 基本的 特徵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프랑스의 政治資金透明化·選舉運動費用制限·腐敗防止에 관한 法制들은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갖는다.

첫째, 이 법률들은 각각 여론의 政治圈淨化 요구와 정치권의 共滅危機意識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때의 요구에 따라 정치자금과 선거운동자금의 규제에 관하여 입법화한 것으로서, 選舉法典등을 포함하여 전체가 하나의 政治改革關聯法制를 이루고 있다. 1988년법이 政治人의 財産申告와 政黨資金·選舉費用의 透明化 및 國庫補助에 관한 규정을 담고, 1990년법은 이

들의 適用範圍를 확대함과 동시에 88년법의 立法的 不備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권의 總體的 腐敗構造는 정치인의 재산신고 내지 정치자금의 투명화만으로는 불식되지 못한 현실에서 정치권의 부패구조와 연결고리가 되는 제반 經濟活動 내지 公共事業契約등에서의 透明化를 목적으로 1993년법이 제정된 것이다.

둘째, 이 법률들의 制定形式은 많은 프랑스 법률들이 그러하듯이 주로 기존의 大統領選舉法이나 選舉法典의 관계규정 내지 기타 關聯法令의 해당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통령선거법이나 선거법전の一部條項(선거운동비용 및 정치자금 규제등)은 수차례 개정된 경우도 있다. 기존 법률들의 개정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固有規定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정치개혁법제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정된 5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보다는 각 법률들을 綜合하여 ①政治人の 財産申告事項, ②選舉運動費用의 規制事項, ③政黨·政治團體의 政治資金의 規制事項 및 ④腐敗防止에 관한 事項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이다.

## 2. 政治改革關聯 法制의 主要內容

### (1) 政治人の 財産申告에 관한 事項

정치인의 재산신고는 1988년 조직법률 제5조와 제6조에서 선거법전 L.O. 제135-1조와 제135-2조를 신설하고, 이를 大統領選舉 立候補者(L.O. 제1조)와 政府構成員 및 일부 選舉職 公職者(L. 제1조~제5조)에 준용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①申告對象者

政治資金透明化法에 의한 재산상태 신고대상자는 大統領 및 대통령선거입 후보자, 상원의원, 하원의원 및 政府의 構成員(장관 및 정무장관), 주의회 의장, 코르시카 및 해외영토의회의장, 선출직 해외영토집행기관의 장 및 인구 3만 이상의 시읍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申告時期

共和國大統領選舉의 입후보자는 입후보와 동시에 憲法委員會(le Conseil constitutionnel)에 본인과 배우자의 財産狀態申告書(une déclaration de situation patrimoniale)를 제출하며, 하원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신고대상자는 해당직무의 任務遂行開始日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기관에 재산상태신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각 申告對象者는 임기만료일 2월 이전 늦어도 1월 이전에 또는 임기중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申告書(une nouvelle déclaration)를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한다.

③申告機關

대통령입후보자와 대통령은 憲法委員會에, 상하양원의원은 각 의원 事務局에, 기타 정부구성원은 정치자금투명화법률 L. 제3조에 의해 설치된 「委員會」에 신고한다. 이 「委員會」는 국참사원 부원장, 대법원장, 회계검사원 원장으로 구성되며, 국참사원 부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정부구성원이 國會議員을 兼職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 議院의 사무국에 재산상태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정부구성원이 하원 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제출한 申告書 중 최종의 것을 의원 사무국에 송부한다.

정부구성원의 직의 임기만료전에 議員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제출한 신고서 중 最終 申告書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④申告内容

본인 및 배우자의 총재산, 즉 소유재산 및 경우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民法典 제1538조의 규정에 의하여 共有로 간주되는 재산의 총액 및 그 변동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申告對象者는 경우에 따라 재산상태의 변동에 관하여 필요한 意見書(des observations)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⑤申告機關의 任務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에 있어서는 신고사항을 통하여 입후보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해태한 입후보자에게는 그 입후보를 無效로 한다. 憲法委員會는 선거결과를 프랑스官報(Journal officiel)에 게재하면서 당선자의 재산상태신고서도 함께 게재한다.

기타 國會議員을 포함한 정부구성원의 재산상태신고서 및 경우에 따라 신고자가 작성한 의견서에 관하여 신고기관은 그 秘密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고기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신고서의 제출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재산상태의 변동을 審査한다. 신고기관의 장은 프랑스관보에 게재할 재산상태에 관한 報告書를 작성한다. 재산상태신고서는 신고자 또는 관계권리자의 明示的 請求가 있거나 그 열람이 소송해결에 필요하거나 진실발견을 위하여 유효한 경우의 司法當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열람할 수 있다.

#### ⑥기 타

신고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大統領選舉 입후보자에게 있어서는 입후보를 무효로 하고(L.O. 제1조 제1항 제2문), 기타 選出에 의한 공직자(대통령은 제외)에게 있어서는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L.O. 제12조 및 L. 제5조). 재산상태신고서의 審査報告書를 제외하고 재산상태신고서 및 의견

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폭로하는 자는 刑法典 제3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 (2) 選舉運動費用의 規制에 관한 事項

대통령선거 및 하원의원의 선거운동비용에 관하여 1988년 법률은 대통령 선거법 및 선거법전을 개정하여 選舉運動費用의 上限額등을 규정하였으나, 88년 6월의 총선거결과 나타난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0년 법률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 ① 規制對象이 되는 選舉의 範圍

選舉運動費用의 규제대상이 되는 선거는 하원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인구 9,000명 이상의 地方議會選舉를 포함한다. (제1조, 선거법전 L. 제52-4조제4항)<sup>8)</sup>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비용의 규제는 일반법률에 의하지 않고 1988년 조직법률 및 사실상 동법률의 修正法인 「大統領選舉 및 下院議員選舉의 選舉運動費用에 관한 法律」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上院議員選舉는 간접선거에 의하므로 자연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選舉資金後援會 및 財政代理人

후보자는 인구 9,000명 미만의 市邑面議會 選舉등을 제외하고 선거가 행해지는 달의 최초일로부터 前 1년간은 選舉資金後援會(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또는 財政代理人(le mandataire financier)을 지명하여, 이들에 의해서만 선거운동비용을 조달 및 지출을 할 수 있다. (선거법전 L. 제52-5조 이하).

選舉資金團體 및 財政代理人은 申告를 요하며,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회

---

8) 1988년법에서는 大統領選舉와 下院議員選舉로 한정되었던 것이 1990년법에 의하여 확대되었다.

계보고서의 제출의 3월후에 당연히 解散 또는 직무를 終了한다.

選舉資金團體 및 財政代理人은 그 재정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은행 또는 우체국 計座를 開設하고, 회계보고서(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에 첨부)를 작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과해져 있다.

### ③寄附金の 制限

선거를 위한 기부금은 自然人은 50,000프랑(93년 개정), 정당·정치단체 이외의 法人은 500,000프랑 범위내에서 선거운동비용 상한액의 10%로 제한되고, 이는 한 후보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同一選舉에서 복수의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sup>9)</sup> 1,000프랑이상의 기부금은 반드시 수표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 候補者에게 이익을 초래한 직접·간접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도 기부로 취급된다.

公益法人,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 1개 또는 수개의 공익법인에 속하는 私法人 또는 카지노·클럽 및 도박장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候補者는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寄附金이나 物質的 支援을 받을 수 없다.

### ④選舉運動費用의 上限額

이 법률이 적용되는 선거의 경우에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선전비용을 제외하고는 選舉費用 上限額의 규제를 받는다. 선거운동비용의 상한액은 지방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의 住民數에 따라 정해지고,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 1인당 250,000프랑으로 하며 선거구 주민 1인당 1프랑씩 증액된다(선거법전 L. 제52-11조).<sup>10)</sup> 또 유럽공동체의회 대의원선거의 選舉費用

9) 1988년법에 의하면 한 후보자에 대하여 自然人은 20,000프랑, 法人은 하원의원에 대해서만 50,000프랑의 범위내에서 기부할 수 있었으며, 1990년법에 의하여는 自然人은 30,000프랑을 상한으로 하였다.

10) 下院議員選舉에 대하여 1988년법에서는 일률적으로 500,000프랑, 1990년

上限額은 후보자명부당 8,000만 프랑으로 한다(제9조). 상한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분 상당액을 國庫로 납부하여야 함과 동시에 후보자는 1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선거법전 L. 제118-3조).

대통령선거의 경우 選舉運動費用의 상한액은 1억 2,000만프랑(제2차투표에 진출한 후보자는 1억6,000만 프랑)으로 한다(대통령선거법 제3조제2항).

#### ⑤ 選舉運動費用 會計報告書

선거운동비용 상한액의 규정을 적용받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選舉資金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選舉運動費用 會計報告書(le compte de campagne)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선거법전 L. 제52-12조). 회계보고서에 기재를 요하는 회계는 선거가 행해지는 달의 최초일의 前 1년간의 것으로 한다. 選舉運動費用 會計報告書を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을 거부한자는 1년간 피선거권이 없다(제7조). 또한 選舉運動費用 會計報告書 및 첨부서류는 全國選舉運動費用會計報告및政治資金委員會에 송부하며, 동위원회는 간략한 형식으로 이를 공표한다.(선거법전 L. 제52-12조제5항).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는 그 투표일전 6개월간의 選舉運動費用 會計報告書を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작성하여 투표일 또는 당선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憲法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L.O. 제2조제3항). 그 회계보고서는 관보에 게재된다(L.O. 제3조).

#### ⑥ 全國選舉運動會計報告 및 政治資金委員會

1990년법률은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 및 후술하는 정당·정치단체의 회계보고서를 소관하는 기관으로서 국참사원, 대법원 및 회계검사원의 각 3명

---

법에서는 인구 80,000명 미만의 선거구는 400,000프랑, 그 이외의 선거구는 500,000프랑을 上限으로 하였다.

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全國選舉運動費用 및 政治資金委員會를 새로이 설치하였다. 동위원회는 選舉運動費用 會計報告書를 승인 또는 반대심문절차에 의하여 각하 또는 정정하는 외에 상한액의 초과가 밝혀진 때에는 선거재판관의 審理를 구하고 또 각종의 違反을 발견한 때에는 기록을 검사국에 송부하는 등의 직무를 행한다.

#### ⑦ 選舉運動費用의 國庫에 의한 償還

하원의원선거의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중 선거법전 L. 제52-11조에서 정한 償還額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93년 개정. 88년법에서는 10분의 1)은 국가에 의한 일시불 상환대상이 된다(선거법전 L.O. 제167조제3항).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에게 상한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하고, 제1차투표에서 총투표수의 5% 이상을 得票한 候補者에게는 상한액의 4분의 1을 상환한다(대통령선거법 제3조제5항).

#### ⑧ 選舉運動의 規制

선거가 행해지는 달의 最初日の 전 3개월간에는 신문, 텔레비전 등의 상업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동일한 기간에 무료전화번호의 주지행위의 금지, 또 6개월간에 공공단체의 성광의 홍보선전의 금지등 선거운동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 ⑨ 罰 則

선거비용을 불법하게 모금하거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會計報告書 작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및 選舉運動에 대한 법률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 (3)政黨·政治團體의 政治資金 規制에 관한 事項

정당·정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1988년의 정치자금투명화법률에 의해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1990년의 選舉費用制限 및 政治資金公開法律에 의하여 대폭 보완되고, 이어 1993년법에 의하여 일부 규정이 수정되었다.

#### ①政黨·政治團體에의 國庫補助

政府는 상원과 하원 사무국의 공동제안에 의하여 매년 예산에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하고, 최근의 하원의원선거에서 50席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세운 政黨·政治團體에 대하여 그 득표수에 따라(제1부분) 그리고 양원에서의 의석수에 따라(제2부분) 國庫補助金を 배분한다.<sup>11)</sup> 정당·정치단체는 이에 대한 댓가로 매년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 ②政治資金團體 및 財政代理人

선거운동비용의 조달을 選舉資金團體 또는 財政代理人에 의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그 지역조직 및 그들이 지정하는 전문조직의 자금조달을 政治資金團體(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politique) 또는 財政代理人(le mandataire financier)에 의하여야 한다(정치자금투명화법률 L. 제 11조--1990년법에 의하여 개정). 政治資金團體 및 財政代理人의 지명절차, 그들의 직무등은 選舉資金團體 및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財政代理人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다만 政治資金團體는 全國選舉運動費用및政治資金委員會에 의하여 그 자격의 승인이 행해짐과 동시에 관보에 공시된다.

---

11) 제1부분의 수급자격을 得票率 5%이상의 정당·정치단체에 한정하는 규정은 1990년 1월 11일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違憲으로 선언되었다. 1988년 법에서는 兩院에서의 의석수에 따라 정당에 國庫補助金이 지급되었다. 프랑스정당의 國庫補助制度에 대한 상세한 것은 八澤隆一, 「フランスにおける政黨への國庫補助」, 法律時報 1992.2., 93~97面 參照.

### ③寄附金の制限

정당에의 寄附金에 상한액의 설정은 1988년법률의 제정시에 검토되었지만 정당활동의 자유에 관한 憲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려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가 1990년 법률의 제정(제13조)에 의하여 그 제한이 이루어졌다(정치자금투명화법률 L. 제11-4조). 즉 정당에 대한 기부에 대하여 自然人은 연간 50,000프랑, 法人은 연간 500,000프랑의 상한액이 설정되었다. 다만, 1993년의 腐敗防止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 총액은 그 정당의 수입의 25% 이하로 하고 회계보고서에 獻金額의 名簿를 첨부하게 하였다. 이 상한액에 위반하여 기부한 自然人 및 法人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체결하는 공공사업등의 公的 契約으로부터 배제된다.

공법상의 법인, 도박장, 외국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지 등 政黨에 대한 기부의 質的 制限에 관한 규정도 설정되었다. 마찬가지로 정당에의 1,000프랑 이상의 기부금은 手票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會計帳簿의 作成·提出

국고보조금을 받은 정당·정치단체는 會計帳簿를 작성하고, 그 지배하에 있는 조직 및 사업체등의 회계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한다. 매년의 회계보고서는 全國選舉運動費用 및 政治資金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관보에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공표한다(정치자금투명화법률 제11-7조).

### ⑤罰則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政治資金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選舉法典 L. 제106조제1항의 기부금·선물 또는 약속에 동의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도 處罰된다.



#### (4) 腐敗防止에 관한 事項

##### ① 腐敗防止本部의 設置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은 법무장관 아래에 腐敗防止本部(le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를 설치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腐敗防止本部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부정행위, 공직자 또는 개인의 수뢰행위, 瀆職行爲, 불법적인 이득행위 또는 공개입찰에서 응찰자의 自由와 平等權을 침해하는 부패행위 등에 관한 조사를 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집중·관리한다. 부패방지본부는 법원의 法官이 이를 관장하며, 법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행위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司法機關에 협력하며, 이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부패방지본부의 구성원과 관계권한자는 업무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1조).

腐敗防止本部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여 범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지방법원 검사는 이를 起訴하고, 이들 행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증인신문절차가 개시되는 즉시 부패방지본부의 임무는 종료된다(제2조·제3조).

##### ② 政治資金·選舉運動資金의 規制強化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은 제1편에 선거운동 및 政黨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들은 선거자금 잔액의 다른 선거자금단체에의 이관금지, 選舉會計報告書에는 기부법인명과 그 기부금액을 기재, 政黨에 대한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 총액은 그 정당의 수입의 25% 이하로 하고 會計報告書에 현금액의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 ③經濟活動의 透明化

부패방지법은 광고, 상업적 도시계획, 공공사업의 위탁, 공개거래 및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去來價格의 明示, 경쟁원리의 철저 및 公開原則을 통하여 경제활동의 투명화를 기한다.

廣告物의 발행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지면의 매입, 즉 광고계약은 대금 및 광고주(지불인)를 명시한 書面에 의하고 반드시 계산서가 전달되어야 한다. 代理人(중개인)은 위임계약서 범위내에서만 중개를 할 수 있으며 중개자는 어떤 報酬 또는 利益金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광고계획에 대한 조언 또는 광고매체에 대한 권고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제20조~제29조). 이와 같은 규제에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商業 및 家內工業基本法(1973.12.27 제정, 제73-1193호)」의 관련조항들의 개정을 통하여, 상업시설의 건설에 관한 契約은 주지사 및 주회계원에 통지하며, 商業施設委員會(la commission d'équipement commercial)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상업시설위원회는 상업 및 가내공업기본법 제29조 및 제29-1조의 규정(상업적인 도시계획)에 의하여 제출된 許可申請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公共事業의 契約에 있어서도 경쟁과 공개원칙을 통하여 경제활동의 투명화를 기한다. 공공사업의 委託에 대하여는 경쟁이 가능하게끔 반드시 광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탁기간을 한정하고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議會의 관여를 강화한다. 특히 지역공동체와 그 연합체 및 공공기관의 심의회는 地方業務에 속하는 공공사업의 위탁원칙을 공표하여야 한다(제42조).

混合經濟會社가 공공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사설서민주택건설기관이 체결한 계약 등은 廣告와 競爭節次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은 事前에 공표한다.

#### ④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節次的 透明化와 統制의 現代化

市邑面 및 시읍면의 조합은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법규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행정기관 성격의 公益機關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 성격의 공익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國營企業體에 적용하는 특별규제는 國參事院의 명령으로 정한다. 관계 시읍면에 의하여 조직된 組合이 상공업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만 설립된 경우에 시읍면은 組合의 管理를 국영기업체의 관리와 같이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74조).

#### IV. 結 語

지금까지 프랑스의 政治改革關聯法制의 성립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20세기 후반 대부분의 國家가 그랬듯이 프랑스에서의 政治改革關聯法制도 腐敗한 政治圈의 淨化에 대한 國民的·時代的 要求를 반영한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自由主義精神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政治活動·政黨의 自由에 대한 집착 속에 그 法制化가 늦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政治改革을 위하여 제정된 政治資金透明化法을 비롯한 위 5개의 法律은 그 규정형식이 매우 難解하다. 프랑스에서 대부분 法律의 制定·改正形式이 그러하지만, 이 法律들도 대부분이 정치관계법인 選舉法典 및 大統領選舉法을 비롯한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해당법률에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核心은 政治人의 財産申告, 選舉運動費用 및 政治資金의 公開, 經濟活動 및 公的節次的 透明化를 통하여 政治圈의 腐敗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政治改革作業의 法制化를 위하여 우리가 프랑스의 政治改革關聯法制에서 몇가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政治人の 財産申告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대한 秘密保持義務 내지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한 被選舉權의 制限, 선거운동비용 내지 정치자금의 收支에 대한 會計報告書의 작성의무, 政治資金·選舉資金團體 또는 財政代理人만을 통한 政治資金의 募金, 정치인의 부패온상이 될 수 있는 건설업·광고업 내지 公共事業의 契約 등 경제활동·공적절차 전반에 있어서 節次的 透明化 등은 우리의 政治改革作業의 法制化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전반의 腐敗防止와 그 중에서도 정치권의 淨化가 비록 몇몇 法制度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公的責任의 위치에 있는 政治人の 政治活動自由에 대한 규제는 政治資金의 透明化=社會淨化=社會正義의 實現이라는 점에서 그 當爲性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附錄 - 1〉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組織法律

(Loi organique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1988년 3월 11일 제정)

(1990.1.15, 1990.5.10, 1993.1.29 법률에 의한 개정)

### 제1편 공화국대통령에 관한 규정

#### 제1장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공화국대통령의 재산신고

- 제1조 ①대통령선거 입후보자는 선거법전 L.O.제13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태신고서(une déclaration de situation patrimoniale) 및 차기대통령선거까지 재직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2월 이전 늦어도 1월 이전에 또는 임기중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후 1월 이내에 당해 신고서에 상당하는 내용의 새로운 신고서(une nouvelle déclaration)를 신고 후 1주일 이내에 프랑상공화국관보에 게재되게 하는 것을 신고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봉인한 서면으로 헌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위원회(1e Conseil constitutionnel)는 위에 제기한 사항으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후보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에 입후보를 무효로 한다.<sup>1)</sup>
- ②헌법위원회는 선거결과를 확정하고 공표하며, 그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결과를 프랑상공화국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한다. 당선이 공표된 입후보자의 재산상태신고서도 이 선거결과와 함께 게재한다.<sup>2)</sup>

#### 제2장 공화국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자금

- 1) 보통선거에의한공화국대통령선거에관한법률(1962. 11. 6, 제62-1292호)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
- 2) 보통선거에의한공화국대통령선거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

제2조<sup>3)</sup> ①선거업무는 아래의 규정을 조건으로 선거법전 L. 제1조~제45조, L. 제47조~제52-2조, L. 제52-4조~제52-12조, L. 제52-16조, L. 제53조~제55조, L. 제57조~제117조 내지 L. 제199조~제203조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직된다.

②L. 제52-1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상한액은 공화국대통령선거 입후보자 1인당 1억2천만프랑으로 한다. 2차 투표에 진출한 입후보자는 각각 1억6천만프랑까지 증액된다.

③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le compt de campagne)와 첨부서류는 당선일 확정된 투표일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헌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선거법전 L. 제52-15조 제1호와 제4호 및 L. 제52-17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④입후보자의 선거자금단체 및 재정대리인의 회계보고상의 차액잔고는 프랑스재단에 귀속한다.

⑤이 조(보통선거에의한공화국대통령선거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제2호에 규정된 선불금의 총액은 선거운동회계보고서의 수입란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sup>4)</sup> 입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는 이 조(보통선거에의한공화국대통령선거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프랑스공화국관보에 게재한다.

제4조<sup>5)</sup> ①이 조직법률의 적용방법은 공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이 공행정규칙은 특히 선전비용에 대한 국가의 협력조건을 정한다.

②제1차투표에 대한 입후보자 명단을 공표할 때에 국가는 다음 항에 예정된 선거운동비용의 일시불 상환금에 대한 선불금의 명목으로 1인당 300만프랑을 각 후보자에게 지급한다.

③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선거운동비용 상한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 보통선거에의한공화국대통령선거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의 개정 (공화국대통령선거및하원의원선거의선거운동자금에관한조직법률(1990. 5. 10, 제90-383호) 제1조에 의하여 재개정).
- 4) 보통선거에의한공화국대통령선거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제3호의 신설 (90. 5. 10법률 제2조에 재개정 - 자구정리)
- 5) 보통선거에의한공화국대통령선거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의 개정(90. 5. 10법률 제3조~제5조에 의하여 재개정)

은 일시불로 각 후보자에게 이를 상환한다: 이 금액은 제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5퍼센트 이상을 득표한 각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상한액의 4분의 1로 평가된다. 다만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④전항에 정한 일시불의 상환은 (보통선거에의한공화국대통령선거에관한법을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편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

### 제1장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제5조<sup>6)</sup> ①하원의원(le député)은 의원직의 임무수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의 재산상황 특히 소유재산 및 경우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민법 제15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로 간주되는 재산의 총액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서를 하원(국민의회)사무국(le bureau de l'Assemblée nationale)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사무국은 접수된 신고서 및 경우에 따라 하원의원이 자기 재산의 변동에 대하여 작성한 의견서(des observations)의 비밀을 보장한다.

②하원의원은 임기만료 2월 이전 늦어도 1월 이전에 또는 하원이 해산되거나 사망 이외의 이유로 하원의원의 임기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의 의원직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한다.

③국민의회 사무국은 전2항에 규정된 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신고자에게 그 신고서의 제출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하원 사무국은 하원의원이 작성한 신고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 밝혀진 재산상태의 변동을 심사한다.

⑤하원 의장은 하원개선시 및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프랑스관

6) 선거법전 L.O. 제135-1조의 신설.

보에 게재할 보고서(un rapport)를 작성한다. 그 보고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하원의원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sup>7)</sup> 선거법전 L.O. 제13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원의원이 제출한 신고서 및 경우에 따라 하원의원이 작성한 의견서는 신고자 또는 관계권리자의 명시적 청구 또는 그 열람이 소송해결에 필요하거나 진실발견을 위하여 유효한 경우의 사법당국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열람할 수 있다.

## 제2장 하원의원선거의 선거운동자금

제7조 (선거법전 L.O. 제163-1조~제163-3조의 신설 ; 1990.1.15 법률 및 1990.5.10 법률에 의하여 선거법전 해당조문 폐지)

제8조 (선거법전 L.O. 제63-4조의 신설 ; 1990.1.15 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9조 (조세일반법전 제238-2조의 개정 ; 1990.1.15 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10조 (선거법전 L.O. 제179-1조의 신설 ; 1990.5.10 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11조<sup>8)</sup> 선거법전 제1권제2편제10장(하원의원에 관한 쟁송)의 규정은 이 장에 적용된다.

## 제3장 통 칙

제12조<sup>9)</sup> ① 선거법전 L.O. 제135-1조에 규정된 신고서 중의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법전 L. 제52-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과 기간 내에 선거운동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및 선거운동회계보고서가 정당하게 기각된 자는 1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법전 L. 제52-1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상한액을 초과한 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7) 선거법전 L.O. 제135-2조의 신설.

8) 선거법전 L.O. 제325조의 개정(1990.5.10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정--자구정리)

9) 선거법전 L.O. 제128조의 개정 (1990.5.10법률 제6조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재개정)



### 제3편 경과규정

제13조 차기 대통령선거에 관하여는 보통선거에의한공화국대통령선거에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는 이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14조 ①제5조,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공포후에 실시된 하원 총선거거후의 하원의원 및 개선후의 상원의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이 법률은 국가의 법률로서 시행한다.

## 〈附錄 - 2〉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法律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1988년 3월 11일 제정)

(1990.1.15, 1990.5.10, 1993.1.29 법률에 의한 개정)

### 제1편 정부구성원 및 일부 선거직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규정

제1조 ① 모든 정부구성원(tout membre du Gouvernement)은 임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법률 제3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선거법전 L.O. 제13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태신고서(une déclaration de situation patrimoniale)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의 구성원이 사망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사임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전항과 동일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① 주의회 의장, 코르시카섬의회 의장, 해외영토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 해외영토 행정부의 선거직 수반 및 인구 30,000명 이상인 시읍면의 장의 직에 취임한 자는 취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법률 제3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선거법전 L.O. 제13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그 임기만료일 2월 이전 늦어도 1월 이전까지, 또는 사임·해임 혹은 의장으로 있는 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의장직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항과 동일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관계자가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소속 의원의 사무국에 이를 제출한다. 선거법전 L.O. 제135-1조 및 L.O. 제135-2조의 규정은 그 신고서에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직에 있는 자가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 신고서 중 최종 신고서를 하원

또는 상원의 사무국에 송부한다.

⑤제1항에 규정한 직의 임기만료 전에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으로서 제출한 신고서 중 최종 신고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⑥이 조의 적용에 관계되는 시읍면의 인구는 시읍면의회 의원의 개선시에 공표된 최근의 전국인구조사결과에 의한 인구이다.

제3조 ①전2조에 규정하는 자의 신고서를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참사원(Conseil d'Etat) 부원장, 대법원(Cour de cassation) 원장 및 회계검사원(Cour des comptes) 원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참사원 부원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전2조에 규정한 자가 각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그자가 소속하는 관청에 통지한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서 및 경우에 따라 신고자가 자기 재산의 변동에 대하여 작성한 의견서의 비밀을 보장한다.

④제출된 신고서 및 작성된 의견서는 신고자 또는 관계권리자의 명시적 요구 또는 그 열람이 소송해결에 필요하거나 진실발견에 유효한 경우의 사법당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전2조에 규정하는 자가 작성한 신고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 밝혀진 그자의 재산상태의 변동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3년마다 및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프랑스관보에 게재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서를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선거법전 L.O. 제135-1조 또는 전조에 규정된 보고서를 제외하고 선거법전 L.O. 제135-1조 및 이 법률 제1조 및 제2조에 정한 신고서 또는 의견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거나 폭로하는 자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형법전(Code pénal) 제3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제5조 ①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1988. 3. 11, 제88-227호) L. 제2조에 정한 신고서 중의 1개를 제출하지 아니한 도의회 의장은 마찬가지로 1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sup>1)</sup>

1) 선거법전 L. 제195조에 제2항 추가.

②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2조에 규정된 신고서 중의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한 시읍면장은 1년 동안.<sup>2)</sup>(피선거권이 없다)

③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2조에 규정된 신고서 중의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의회 의장 또는 코르시카섬의회 의장은 1년 동안.<sup>3)</sup>(피선거권이 없다)

④이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신고서 중의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한 해외영토 의회의 의장 및 행정부의 선거직 수반은 1년 동안 해외영토의회에의 피선거권이 없다.

### 제2편 하원의원선거의 선거운동자금에 관한 규정

제6조<sup>4)</sup> ①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5퍼센트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타 선거비용 중 L. 제52-11조에서 정한 상한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에 의한 일시불 상환(un remboursement forfaitaire)의 대상이 된다.

②전항의 상환액은 선거운동회계보고서에 기재된 당해 입후보자의 비용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전항에 규정된 일시불 상환액은 L. 제52-11조 및 L. 제52-1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입후보자 및 L. O. 제135-1조에 규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선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편 정당과 정치단체 및 그 자금에 관한 규정

제7조 ①정당과 정치단체는 자유로이 결성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인격을 갖는다.

2) 선거법전 L. 제230조제4호 신설.

3) 선거법전 L. 제340조제3항제3호 신설.

4) 선거법전 L. O. 제167조제3항~제5항 신설 (1990. 1. 15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재개정 - 자구정리, 1993년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해 재개정).

②정당과 정치단체는 소송당사자적격을 갖는다.

③정당과 정치단체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정당과 정치단체는 그 목적에 적합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현행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관지(les journaux)를 발행하거나 조직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sup>5)</sup> ①하원 및 상원 사무국은 공동으로 정당과 정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당해년도 재정법안에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편성된 예산액은 다음에 계기한 2개 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뉜다.

1. 하원의원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과 정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제1차분
2. 의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정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제2차분

제9조<sup>6)</sup> ①제8조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의 제1차분은 최근의 하원의원 선거시 5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입후보시킨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이를 배분한다. 이 조건은 1개 또는 수개의 해외의 도 또는 영토에서만 입법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입후보시킨 정당 및 정치단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고보조금의 배분은 각 당해 정당 및 정치단체가 국회의원 선거의 제1차 투표에서 획득한 투표수에 비례하여 이를 행한다.<sup>7)</sup>

②제1항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목적으로 하원의원 입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그의 후보자신청서에 소속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한다.

③제8조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의 제2차분은 매년 제1차 정기회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해당 의원 사무국에 등록되거나 소속된 것으로 신고된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제1차분을 받은 정당 및 정치단체에 이를 배분한다.<sup>8)</sup>

④국회의원은 전항의 적용을 위하여 1개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만을 지정할

5)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1990.1.15, 제90-55호) 제10조에 의하여 제2항 추가.

6)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개정.

7)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1993.1.29, 제93-122호) 제14조에 의하여 제1항 재개정(75→50으로).

8)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제3항 재개정.

수 있다.

⑤늦어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하원 사무국과 상원 사무국은 신고에 의한 의원의 정당과 정치단체간 분포상황을 수상에게 통보한다.

⑥이 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은 하원이 해산되어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선거를 실시한 후 두번째 목요일로부터 기산한다.

⑦각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배분된 보조금액은 당해 년도 재정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 이를 기재한다.

제10조 ①지출통제의체계화에관한법률(1922.8.10)의 재정통제에 관한 규정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예산의 관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sup>9)</sup>

②수혜자인 정당과 정치단체는 회계검사원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보조받는협회·단체및사기업의통제에관한명령(1935.10.30)의 규정은 그 정당과 정치단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sup>10)</sup> 정당 및 그 정당의 지역·특별조직은 정치자금단체(association de financement politique) 또는 자연인으로서 특히 그 정당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médiaire)의 중개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한다.

제11-1조<sup>11)</sup> ①선거법전 L. 제52-14조에 정한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는 정당의 정치자금지원을 위한 후원회의 사회적 목적의 한정 및 다음 항에 정한 정관의 준수를 조건으로 정당의 정치자금단체의 자격을 승인한다.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에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②정당의 정치자금단체 자격을 승인받은 후원회의 정관은 다음의 계기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후원회가 활동을 하는 선거구의 확정
2.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수령한 모든 기부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한 요약된 연례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한다는 약속. 이 보고서는 3월이내에 행정

9)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해 제1항 개정.

10)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개정.

11)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신설.

당국에 송부된다.

제11-2조<sup>12)</sup> ①정당은 선정된 재정대리인(mandataire financier)인 자연인의 성명을 소재지의 행정관청(도)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지명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재정대리인이 활동을 하는 선거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재정대리인은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수령한 모든 기부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한 요약된 연례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3월이내에 행정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3조<sup>13)</sup> 정당은 연달아 2인 또는 수인의 중개인(intermédiaires)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당은 지명 또는 승인요청과 동일한 형식으로 재정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정치자금단체의 승인의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는 정당이 새로운 재정대리인을 지명하거나 새로운 정치자금단체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인출이 정지된다. 각 정치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은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관리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4조<sup>14)</sup> ①동일한 정당의 정치자금단체로 승인된 1개 또는 수개의 후원회 또는 1명 또는 수명의 대리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신원확인을 받은 자가 기부를 동의할 수 있는 금액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매년 50,000프랑,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500,000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경우에 법인의 기부예정 금액은 당해연도의 최종회계보고서에 기재된 총재원의 25퍼센트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법에 규정된 총예산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기부하기로 한 법인의 전체명단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이를 첨부한다.<sup>15)</sup>

②정치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그 영

---

12)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신설.

13)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신설.

14)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신설.

15)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제1항 개정

수증의 작성과 이용조건은 국참사원의 명령으로 정한다. 자연인이 동의한 20,000프랑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교부한 영수증에는 수령한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도 국참사원의 명령으로 정한다.

③정당의 정치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에게 동의한 1,000프랑 이상의 기부금은 이를 수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공법인,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1개 또는 수개의 공법인에게 속하는 사법인, 카지노·씨클 및 도박장은 정당의 정치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에게 어떠한 기부도 할 수 없다.

⑤어떠한 정당의 정치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도 외국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 또는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⑥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정치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이 발급한 증명서와 서류에는 경우에 따라 모금액의 수령인인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물론 후원회의 명칭과 승인일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행정관청에의 신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5조<sup>16)</sup> 제1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 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1-6조<sup>17)</sup> 이 법률 제11-1조 및 제11-4조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후원회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제11-7조<sup>18)</sup> ①제8조 및 제11-4조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수혜를 받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에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회사 또는 기업체 내지 행정기관 본부의 회계보고와 같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회계보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적인 결정권 또는 관리권을 행사한다.

②제1항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매년 결산을 행한다. 회계보고서는 2명의 감사의 확인을 받고, 회계년도 다음 년도의 1/4분기에 선거법전 L. 제

16)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신설.

17)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신설.

18)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신설.



52-14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에 이를 제출한다. 동 위원회는 프랑스관보에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공표한다. 각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경우에는 결산서에 각 기부금 액수의 명세서와 함께 제11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하기로 동의한 선거자금단체 이외의 법인의 전체 명단을 기재한다.<sup>19)</sup>

③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가 이 조에 정한 의무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이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에 1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1-8조<sup>20)</sup> 정치자금단체를 승인받았거나 재정대리인을 지명한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그 후원회 또는 대리인의 중개를 통하여 확인을 받은 자로부터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9조<sup>21)</sup> ①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50명이상의 후보자를 입후보시킨 각 정당의 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자금회계보고 및 정당의 정치자금단체의 회계보고에 대한 검사서에 의거하여 년 2회 감사를 받는다.

② 이 조의 적용조건은 국참사원의 명령으로 정한다.

#### 제4편 잡칙 및 경과규정

제12조<sup>22)</sup> 선거법전 L. 제106조제1항의 기부금·선물 또는 약속에 동의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는 3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1,800프랑 이상 18,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① 모든 선거인·후보자 및 정당이나 정치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열람

---

19)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고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제2항 개정.

20) 선거비용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신설.

21)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고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신설

22) 선거법전 L. 제106조제2항(1990. 1. 15 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해 재개정).

하고 복사할 수 있다.<sup>23)</sup>

②정보검색·색인표및자유에관한법률(1978.1.6, 제78-17호) 제32조는 삭제한다.

제14조 상사회사에관한법률(1966.7.24, 제66-537호) 제168조제5호에 있어서 “후보 및 찬조주식의 목록”은 “선거법전 L.O.제163-3조의 정한 바에 따라서 행한 후원·찬조 및 기부의 기명주식 목록”으로 한다.

제15조<sup>24)</sup> ①국가는 선거구의 도청소재지와 투표사무소간의 명부 및 후보자의 회람과 투표용지의 우송료를 부담한다.

②적어도 투표수의 5퍼센트를 득표한 명부 또는 후보자는 서류비용 및 회람과 투표용지의 인쇄비를 일시불로 환불받는다.

③이 조의 적용조건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참사원의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6조 통신의자유에관한법률(1986.9.30, 제86-1067호) 제14조제2항에 있어서 “프랑스의 정치운동자금지원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시행일까지”를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1988.3.11, 제88-227호)의 공포일로부터 4년 동안”으로 한다.

제17조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공포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후에 임명 또는 선출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 ①이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정부는 이 법률과 정치자금 투명화에관한조직법률(1988.3.11, 제88-226호)에 포함된 규정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양원의 사무국 명의로 제출한다.

②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어도 1월 내지 2월 이후 1989~1990년도 제1차 정기회기에 제1항에 말한 법률의 적용조건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행한다.

제19조 ①이 법률의 규정은 해외영토 및 마요트(Mayotte)지역단체에 적용한다.

②이 법률은 국가의 법률로서 시행한다.

23) 선거법전 L.제28조제2항의 개정.

24) 외국의프랑스인고등위원회에관한법률(1982.6.7, 제82-471호) 제5-1조(삽입)

### 〈附錄 - 3〉 選舉費用制限 및 政治活動資金公開에 관한 法律

(Loi n°90-55 janvier 1990 relative à la limitation des dépenses électorales et à la clarification du financement des activités politiques)

(1990년 1월 15일 제정)

(1993.1.29. 법률에 의한 개정)

#### 제1편 선거비용의 지원과 상한액 설정

제1조 선거법전 제1권제1편에 다음과 같이 제5-1장을 삽입한다.

##### 〈제5-1장 선거비용의 지원과 한도액 설정〉

〈L. 제52-4조 ①선거가 실시되는 달 첫째 일의 1년전부터 투표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는 특히 그가 지명한 대리인 즉 선거자금단체(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또는 재정대리인(le mandataire financier)이라 칭하는 자연인의 중개에 의하에서만 그 선거운동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선거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는 보증금(le cautionnement)과 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는 그들의 중개에 의해서만 선거운동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③조기 또는 보궐선거(1'élection anticipée ou partielle)의 경우에 이 규정은 당해 선거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된다.

④이 조의 규정은 인구 9,000명 미만인 지역의 도의원 선거 및 인구 9,000명 미만인 시읍면의원 선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L. 제52-5조 ①선거자금단체(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는 단체계약에관한법률(1901.7.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후보자가 서명한 동의서(1'accord écrit)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선거자금단체는 모든 금융거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선거자금단체의 회계보고서는 동 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 또는 동 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후보자명부(1a liste)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명부의 제1번 후보자(1e candidat tête de liste)의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선거자금단체는 L. 제5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한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모금을 할 수 있다.

④선거자금단체는 후원하고 있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자금 회계보고서(1e compte de campagne)를 제출하고 3월 후에 당연히 해산된다. 선거자금단체는 3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순자산의 귀속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동 자산은 정당의 정치자금단체 또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익기관에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 이 항에 정한 조건과 기간내에 귀속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자금단체 소재지의 도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검사가 지방법원에 이에 대하여 제소하고 동법원은 순자산을 분배받을 공익기관을 결정한다. 순자산의 귀속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같이 행한다.<sup>1)</sup>

⑤선거자금단체의 지원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후원회는 입후보등록기간이 경과된 후에 해산된다. 동후원회가 해산되고 3월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는 순자산의 귀속문제는 제4항의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L. 제52-6조 ①후보자는 그가 선임한 재정대리인(1e mandataire financier)의 성명을 그의 주소지의 행정관청(도)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그 재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정대리인은 모든 금융거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 계좌의 개설자는 후보자의 특별히 지명된 재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계좌의 두서에 명시한다. 재정대리인의 회계보고서는 그 대리인을 지명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회계보

1)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1993. 1. 29, 제93-122호)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제4항 개정. ...“다른 선거자금후원회”를 삭제.

고서 또는 그 대리인을 지명한 후보자가 후보자명단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명단의 제1번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에 이를 첨부한다.

③재정대리인은 L. 제52-4조에 정한 기간동안에 한하여 기금을 위한 모금을 할 수 있다.

④재정대리인의 직무는 그 직무를 위임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3월 이후 또는 후보자가 법정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경과된 후에 종료된다.

⑤재정대리인은 그의 업무수행이 끝날 때에 후보자에게 결산서를 제출한다. 차액잔고(1e solde positif)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의 정치자금단체 또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익기관에 귀속된다. 이 항에 정한 조건과 기간내에 귀속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 주소지의 도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검사가 지방법원에 이에 대하여 제소하고 동법원은 순자산을 분배받을 공익기관을 결정한다. 순자산의 귀속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같이 행한다.<sup>2)</sup>

〈L. 제52-7조 ①후보자는 동일한 선거에서 선거자금단체와 재정대리인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는 계속하여 2명 또는 수명의 중개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후보자는 지명 또는 동의부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선거자금단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는 후보자가 새로운 재정대리인을 지명하거나 새로운 선거자금단체를 동의할 때까지 인출이 정지된다. 각 후원회 또는 재정대리인은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자금관리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가 연기명투표(1e scrutation plurinominal)의 범위 내에서 1명 또는 수명의 후보자가 이미 동의를 한 후원회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L. 제52-8조 ①동일한 선거에서 1명 또는 수명의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자금을 후원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신원확인을 받은 자가 기부하기로 한 금액

---

2)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제5항 개정. ...“다른 선거자금후원회”를 삭제.

은 자연인이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000프랑, 정당이나 정치단체이  
외의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50,000프랑 범위내의 선거비용 한도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후보자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로 한 자로  
서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제외한 법인의 전체 명단은 L. 제52-12조에 규정  
한 후보자의 선거자금 회계보고서에 각 기부금의 액수를 신고서와 함께  
첨부한다.<sup>3)</sup>

②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동의한 1,000프랑 이상의 기부금은 이를  
수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후보자에게 현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L. 제52-11조의 적용에 있어  
서는 100,000프랑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된 선거비용액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④공법인,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 1개 또는 수개의 공법인에게 속하는 사  
법인 또는 카지노·클럽 및 도박장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보자의 선  
거운동자금지원을 위한 어떠한 기부도 할 수 없다.

⑤후보자는 누구든지 여하한 비용명목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L. 제52-9조 ①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선거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이 발급한 증명서 및 서류, 특히 기부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는 모금액의 수령인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단, 후원회의 명칭, 후원  
회의 신고일자 또는 재정대리인의 성명 및 재정대리인의 지명일자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에는 후보자는 선거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 L. 제52-8조의 규정을 적용한  
다.>

<L. 제52-10조 선거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은 작성 또는 이용 조건이 국참  
사원의 명령으로 정해진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한다. 자연인이 기부한  
20,000프랑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교부한 영수증에는 수령자인 후보자의  
성명이나 후보자의 명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도 국참사원의 명령으

3)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제1항 개정. ...제2문 추가.

로 정한다.>

<L. 제52-11조 ①L. 제5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거의 경우에,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선전비용 이외에 회계보고를 위하여 동조에 정한 기간중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에 의해 지출되는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설정한다.

②선거비용의 상한액은 선거구의 주민수에 따라 정한다.<sup>4)</sup>

③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상한액은 후보자 1인당 250,000프랑으로 하며, 선거구 주민 1인당 1프랑씩 증액된다.<sup>5)</sup>

④선거비용 상한액은 국가통계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생계비 지수에 따라서 3년마다 명령에 의하여 이를 현실화한다.>

<L. 제52-12조 ①L. 제52-11조의 규정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받는 각 후보자 또는 각 명부의 제1번 후보자는 L. 제52-4조에 정한 기간중 자신이 선거자금으로 받은 금액을 출처에 따라 기재하고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한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보자를 지원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정치단체 및 정당이 그 후보자를 위하여 묵시적으로 그의 동의를 얻어 직접 행한 지출도 그를 위한 행위로 본다. 후보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 그가 받은 기부 및 현물 기부를 수입과 지출로 환산하여 산입하여야 한다.

②선거실시 후 2월이내에 각 후보자 또는 제1차 투표자 명부의 제1번 후보자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와 첨부서류에 수입금

4)

선거구 인구 (名)	선거비용상한액(주민 1인당) (프랑)		
	시읍면의원선거	도회의의원선거	지역권의원선거
15,000名 이하	11	6	5
15,001~ 30,000	10	5	5
30,001~ 60,000	9	4	5
60,001~100,000	8	3	5
10,001~150,000	7	3	4
15,001~250,000	6	3	3
250,000名 이상	5	3	2

5)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제3항 개정

증거서류, 계산서, 견적서 및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보증금은 지출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차 투표이전에 행해진 비용의 결제를 조건으로 제1차 투표에 대하여 제출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회계 보고서에는 그 투표일 이후의 지출비용을 기재할 수 없다. L. 제52-4조에 규정된 기간중에 형성된 잔여 고정자산의 시세는 선거운동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에 이를 송부한다.

⑤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간단한 형식으로 선거운동 회계보고서를 공표한다. 공표문서에는 각 기부금의 액수에 관한 신고서와 함께 각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자금을 기부하기로 한 법인의 전체 명단을 기재한다.<sup>6)</sup>

〈L. 제52-13조 ①동일한 명부에 기재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행한 후보자의 지출은 제1차 투표 전에 명부를 정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위하여 행한 지출로 이를 합산한다.

②제2차 투표를 위하여 새로운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 L. 제52-12조에 정한 지출은 제1차 투표시 후보자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명부의 제1번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시 새로운 명부에 기재된 최다득표 후보자(le plus grand nombre de candidats)가 있는 명부의 제1번 후보자가 속하는 명부를 위하여 제1차 투표일로부터 이를 합산한다.〉

〈L. 제52-14조 ①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를 설치한다.

②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명령에 의하여 임명된 다음 각호의 계기한 9인으로 구성되며 그의 임기는 5년이다.

1. 사무국의 자문을 거친 후 국참사원 부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명된 국참사원 판사 또는 명예판사 3인

---

6)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제5항 개정...제2문 추가.



2. 사무국의 자문을 거친 후 파기원자의 추천에 의하여 지명된 파기원 판사 또는 명예판사 3인

3. 실장의 자문을 거친 후 회계검사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명된 회계검사원 위원 또는 명예위원 3인

③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한다.

④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그 임무완수를 위하여 당공무원을 두어 그 직무를 지원받고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의 실시를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L. 제52-15조 ①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선거운동회계보고서를 승인하고 반대신문절차를 거쳐 기각하거나 수정한다.

② L. 제118-2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6월 이내에 회계보고서의 제출을 발표한다.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회계보고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간내에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가 확인한 때에 그 회계보고가 기각되거나 또는 수정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동위원회는 선거소송담당 판사에게 제소한다.

④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가 L. 제52-4조 내지 L. 제52-13조 및 L. 제52-16조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에 동위원회는 소송서류를 검찰에 송부한다.

⑤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은 법률로 이를 정한 경우에는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에서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를 승인한 후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

⑥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초과한 사실을 종국판사가 확인한 경우에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후보자가 국고에 불입하여야 하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한다. 이 금액은 외국의 채권인 경우와 동일하게 조세 및 국유재산으로 이를 징수한다.>

〈L. 제52-16조 여하한 형태의 상업적 광고도 후보자, 명부의 책임자 또는 정식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명백한 동의없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부를 위한 선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L. 제52-17조 ①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 또는 그 추가서류에 신고된 지출 금액이 평소 집행된 액수보다 적은 경우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상황의 평가에 필요한 모든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직권으로 선거운동 비용에 있어서의 잔액과 기입된 금액 (l'inscrit)을 평가한다. 그와 같이 기입된 금액은 관계 자연인 또는 법인이 L.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이익금, 서비스 및 후보자에게 이익을 주는 현물 기부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L. 제52-18조 L. 제5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선거를 실시한 다음 년도에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그 활동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공식화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2조<sup>7)</sup> 선거를 실시하는 달 첫째 일의 3월전부터 투표일까지 선거에 관한 벽보는 날인된 포스터의 경우에도 벽보를 부착하는 장소 이외의 곳 또는 다른 후보자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 이를 부착하는 것을 금한다.

제3조<sup>8)</sup> 선거를 실시하는 달 첫째 일의 3월전부터 투표일까지 언론 또는 시청각통신에 의한 상업적 광고방식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한다.

제4조<sup>9)</sup> 선거를 실시하는 달 첫째 일의 3월전부터 투표일까지 후보자는 일반인에게 어떠한 무료전화호출번호도 알려 줄 수 없다.

제5조<sup>10)</sup> ①단기명투표에 있어서의 후보자 또는 연기명투표에 있어서 명부의 제1번 후보자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 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선거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L. 제5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모금한 경우

7) 선거법전 L. 제51조제3항의 개정.

8) 선거법전 L. 제52-1조의 개정.

9) 선거법전 L. 제50-1조의 신설.

10) 선거법전 L. 제113-1조의 신설.

2. L. 제5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받은 경우
3. L. 제5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4. L. 제52-12조 및 L. 제52-13조에 정한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의 작성 형식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 또는 추가서류에 고의로 실제 지출금보다 적게 기재한 경우
6. 그의 요청에 의하거나 명백한 동의를 얻어, L. 제51조 및 L. 제5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벽보를 부착하거나 상업적 광고를 하여 이득을 본 경우
7. 그의 요청에 의하거나 명백한 동의를 얻어, 무료전화호출번호를 일반인에게 알려서 이득을 본 경우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L. 제5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를 하는 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 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이 항의 규정은 그 법인의 장에게 적용된다.

③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명부의 제1번 후보자를 위하여, 그의 요청에 의하여 행동하거나 그의 명백한 동의를 얻어서 모금을 하지 아니하고 L. 제52-12조에 정한 것과 동종의 지출을 행한 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 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6조 ①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정한 선거구의 행정판사(le juge administratif)에게 선거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행정판사는 L. 제52-12조제2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그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 정치자금위원회의 결정이 송부될 때까지 판결을 연기한다. 111

②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가 제소를 한 경우에 선거소송담당 판사는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의 피선거권의 상실을 확인하며, 당선에 확정된 후보자가 그 자격상실에 관련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의 사퇴를 선포한다. 선거소송담당 판사는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가 수정을 행한 후에도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1년간 당해 후보

11) 선거법전 L. 제118-2조의 신설.

자의 피선거권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sup>12)</sup>

제7조 ①선거법전 L. 제52-12조에 정한 조건과 기간내에 선거운동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의 작성을 거부한 자는 1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sup>13)</sup>

②선거법전 L. 제52-12조에 정한 조건과 기간내에 선거운동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의 작성을 거부한 자는 1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sup>14)</sup>

③선거법전 L. 제52-12조에 정한 조건과 기간내에 선거운동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의 작성을 거부한 자는 1년간 피선거자격을 상실한다.<sup>15)</sup>

제8조 ①선거법전 L. O. 제163-2조 내지 L. O. 제163-4조를 삭제한다.

②(선거법전 L. 제106조제2항의 개정: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12조)

③(선거법전 L. 제167조제5항의 개정: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6조제3항)

제9조<sup>16)</sup> 선거법전 L. 제52-11조에 정한 선거비용 상한액은 유럽공동체의회 대의원선거(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à l'Assemblé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의 후보자명단에 대하여서는 8,000만프랑으로 한다.

## 제2편 정당의 정치자금지원

제10조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1988. 3. 11, 제88-227호) L. 제8조의 개정)

제11조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9조의 개정)

제12조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10조제1항의 개정)

---

12) 선거법전 L. 제118-3조의 신설.

13) 선거법전 L. 제197조의 개정.

14) 선거법전 L. 제234조의 개정.

15) 선거법전 L. 제341-1조의 신설.

16) 구주공동체의회대의원선거에관한법률(1977. 7. 제77-729호) 제19-1조의 신설.

제13조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11조 개정 및 L. 제11-1조~L. 제11-8조의 신설)

### 제3편 지역공동체의 관리에 대한 정보의 개선

제14조<sup>17)</sup> 지역회계검사소의 제안·보고 및 예심사항은 감사관이 이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준수의무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sup>18)</sup> 지역회계검사소의 판결·권고·제안·보고 및 의견은 반대심문절차를 거쳐 일괄적으로 이를 의결·채택한다.

제16조 <생략>

### 제4편 잡 칙

제17조 <생략>

제18조 선거법전 L. 제52-8조에 정한 기부금으로서 확정적인 반대없이 동법전 L. 제52-4조에 규정한 선거자금단체 또는 재정대리인에게 수표로 지급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에 의하여 입증된 기부금은 동일한 범위안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11-4조에 정한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sup>19)</sup>

제19조 1989년 6월 15일 이전에 범한 위법행위로서 선거운동 또는 정당과 정치단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금지원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그 위법행위자의 개인적인 축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사면한다. 다만, 형법전 제132조 내지 제138조 및 175조 내지 제179조에 정한 위법행위와 그 일자에 국회의원직을 부여받은 자가 범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그러하

17) 지역권의회계검사소에관한법률(1982. 7. 10, 제82-594호) 제6조제2항의 개정.

18) 시읍면·도및지역권의관리·자유에관한법률(1982. 3. 2, 제82-213호) 제84조제2항의 개정.

19) 일반조세법 제238-1조제1항제1호의 개정.

지 아니하다.

제20조 ①민간 또는 상사회사가 선거법전 L. 제52-8조 및 정치자금투명화에 관한법률 L. 제11-4조에 정한 조건과 범위에서 정당의 선거자금단체, 재정 대리인 또는 정치자금단체에 동의한 기부는 정관으로 달리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 사회적 목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상사회사법(1966. 7. 24, 제66-537호) 제16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 모든 주주는 명령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서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계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5. 감사역이 입증한 총액, 일반조세법전 제238-1AA조에 정한 세금공제를 받은 액수, 후원자의 기명주식명단·지원금 및 선거법전 L. 제52-4조에 정한 선거운동자금후원회나 재정대리인 또는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1개 또는 수개의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행한 기부>

제21조 ①경죄법원(les tribunaux correctionnels)은 선거법전 L. 제52-8조 및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11-4조에 각각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공개거래의 배제를 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정한 공개거래의 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지역단체와 그의 공공기관 및 허가받은 기업 또는 지역단체가 체결한 거래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2조<sup>20)</sup> 정치적 성격의 광고방송은 이를 금한다.

제23조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8조에 정한 예산액과 재정법에 정한 액수는 국민의회의 다음 총선거까지 이 법률에 따른 예산편성시 동법률 L.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

제24조 후보자가 타도와 해외영토내에서 제시한 운임으로서 해상 및 항공운임은 비용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선거법전 L. 제52-14조를 제외하고 이 법률 제1편의 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6조 바린도·오린도 및 모젤도의 경우 이 법률에 정한 후원회는 지방민

20) 통신의자유에관한법률(1986. 9. 30, 제86-1067호) 제14조제2항의 개정.

법전(Le code civil local)에 정한 형식과 조건에 따라서 이를 설치한다.  
제26-1조<sup>20</sup> 전국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및정치자금위원회는 매년 정치자금후원  
관계 법규의 적용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동보고서  
는 정부 및 의회 사무국에 이를 제출하고 공개한다.

제27조 ①이 법률의 시행방법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참사원의 명령으로 정  
한다.

②이 법률은 국가의 법률로 시행한다.

---

21)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이 조  
신설.

## 〈附錄 - 4〉 共和國大統領 및 下院議員의 選舉運動資金에 관한 組織法律

(Loi organique n° 90-383 du 10 mai 1990 relative au financement en vue de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e celle des députés)

(1990년 5월 10일 제정)

### 제1편 공화국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

- L.O. 제1조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국대통령선거법(1962.11.6, 제62-1292호) 제3조제2항의 개정)
- L.O. 제2조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국대통령선거법 제3조제3항의 개정)
- L.O. 제3조 ①(보통선거에 의한 공화국대통령선거법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  
②(보통선거에 의한 공화국대통령선거법 제3조제5항제1호제2문 삭제)
- L.O. 제4조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국대통령선거법 제3조제5항제2호 신설)
- L.O. 제5조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국대통령선거법 제3조제5항제3호의 개정)

### 제2편 하원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 L.O. 제6조 (선거법전 L.O. 제128제2항의 개정)
- L.O. 제7조 (선거법전 L.O. 제136-1의 신설)
- L.O. 제8조 ①(헌법위원회조직법률을 선언하는 1958년 11월 7일의 정령 제 58-1067호 제41-1조의 신설)  
②(선거법전 L.O. 제186-1조의 신설)
- L.O. 제9조 ①(헌법위원회조직법률을 선언하는 1958년 11월 7일의 정령 제 58-1067호 제42조제1항의 개정)  
②(선거법전 L.O. 제187조제1항의 개정)
- L.O. 제10조 (선거법전 L.O. 제163-1조의 폐지)
- L.O. 제11조 ①(선거법전 L.O. 제179-1조의 폐지)  
②(선거법전 L.O. 제325조의 개정)



## 〈附錄 - 5〉 腐敗防止 및 經濟生活과 公的節次의 透明化에 관한 法律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1993년 1월 29일 제정)

제1조 ①부패방지본부(le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는 법무부장관 밑에 설치되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부정행위, 공직자 또는 개인의 수뢰행위, 독직행위, 불법적인 이득행위 또는 공개입찰에 있어서의 응찰자(candidats)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탐지 및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부패방지본부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정한 행위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 사법기관에 협력한다.

③부패방지본부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1항에 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며, 동 의견은 이를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만 표명한다. 동 기관은 표명된 의견을 누설할 수 없다.

④부패방지본부는 법원의 법관이 이를 관장하며, 법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⑤(헌법위원회의 결정(1993.1.20, 제92-316호)에 의하여 헌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규정)

⑥부패방지본부의 구성원과 관계권한자(les personne qualifiées)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부패방지본부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여 범법행위 사실이 밝혀진 즉시 지방법원 검사(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는 이를 기소한다.

제3조 제1조에 정한 행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증인신문절차가 개시된 즉시 부패방지본부는 임무가 종료(dessaisi)된다.

제4조 부패방지본부는 검찰 및 제1조에 정한 행위에 대한 사건을 담당할 예심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된 자료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하며 순수한 정보로서만 가치를 가진다.

제5조 (헌법위원회의 결정(1993.1.20, 제92-316호)에 의하여 헌법에 부합되

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규정)

제6조 제1조 내지 제5조의 적용방법은 국참사원의 명령으로 정한다.

## 제1편 선거운동 및 정당에 대한 재정후원

제7조 ①(선거법전 L. 제52-5조제4항의 개정)

②(선거법전 L. 제52-6조제5항의 개정)

제8조 (선거비용의제한및정치자금공개에관한법률 제26-1조의 신설)

제9조 ①(선거법전 L. 제52-8조제1항의 개정)

②(선거법전 L. 제52-12조제5항의 개정)

제10조 (선거법전 L. 제52-11조제3항의 개정)

제11조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11-9조의 신설)

제12조 (선거법전 L. 제167조제3항의 개정)

제13조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11-4조제1항 및 L. 제11-7조제2항의 개정)

제14조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9조제1항의 개정)

제15조 (정치자금투명화에관한법률 L. 제9조제3항의 개정)

제16조 이 편의 규정은 마요트(Mayotte)지역공동체에서 적용된다.

제17조 이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편 경제활동의 투명화

### 제 1 장 총 칙

제18조<sup>1)</sup> ① 모든 생산자·서비스 제공자·도매상인 또는 수입업자는 상품 구

매자 또는 직업적 활동을 위한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가격표를 전달하고 판매조건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분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매상인을 통하여 특정한 서비스 대신에 사례금을 주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각각 보관할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형법 제121-2조의 정한 바에 따라 법인에게서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법인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제131-38조에 정한 방법에 의한 벌금
2. 형법 제131-39조제5호에 정한 바와 같이 5년동안 공개거래에서 배제하는 형벌

제19조의 ①이 조의 규정에 대한 모든 위반행위는 5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②벌금액은 계산된 금액 또는 계산되어야 하는 금액의 50퍼센트로 정할 수 있다.

③형법 제121-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게서는 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제131-38조에 정한 방법에 의한 벌금
2. 형법 제131-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동안 공개거래에서 배제하는 형벌

## 제 2 장      광      고

제20조 ①광고물의 발행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지면(1'espace publicitaire)의 매입은 광고주를 위하여 위탁계약서의 범위내에서만 중개인이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계약서에는 대리인의 보수 조건, 필요한 경우 동계약서의

- 
- 1) 가격및경쟁자유에관한대통령령(1986.12.1, 제86-1243호) 제33조의 개정.
  - 2) 가격및경쟁자유에관한대통령령 제31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범위내에서 행하는 각종 광고서비스 및 그에 대한 각 보수 금액을 정하고, 위탁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중개인이 행한 기타 광고서비스 및 그에 대한 보수 총액을 기재한다. 판매인이 동의한 종류의 할인 또는 광고료 금액은 광고주에게 교부한 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하고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인이 이를 전부 또는 일부 보관할 수 있다.

③광고주가 제1항에 정한 배임에 대한 대금을 판매인에게 직접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매인은 광고주에게 직접 계산서를 전달한다.

제21조 제20조제2항에 정한 대리인은 위탁자로부터 그의 임무 수행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외의 지급금 또는 판매인의 명의로 지급되는 어떠한 보수 또는 이익금도 받을 수 없다.

제22조 광고계획에 대한 조언(conseil en plan média) 또는 광고매체에 대한 권고를 하는 자는 광고판매인의 명의로 지급되는 어떠한 보수 또는 이익금을 받을 수 없다.

제23조 ①광고기관(le support) 또는 국영기업체(la régié)로서 광고를 판매하는 자는 광고방송을 한 다음 1월이내에 광고주에게 광고서비스를 행한 내용과 상태를 직접 설명한다.

②광고판매인은 광고방송 조건을 조정하기 전에 변경하는 경우 광고주에게 알리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광고판매인은 광고주에게 변경된 사항을 설명한다.

③대리인의 중개인을 통하여 광고지면을 매입한 경우 제2항에 정한 의무는 이를 대리인이 광고주에게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인도 대리인에게 진다.

제24조 광고계획에 대한 조언 또는 광고매체에 대한 권고를 하는 자는 재정 협력금액을 명시하면서, 일반 판매조건에서 본인 또는 그의 그룹이 제20조에 정한 판매인과 유지하고 있는 재정적인 관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①다음 각호의 경우는 2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1. 광고주 또는 중개인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광고계획에 대한 조언 또는 광고매체에 대한 권고를 하는 자가 일반 판매조건에서 제24조에 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②판매자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주에게 직접 계산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및경쟁자유에관한대통령령 제31조에 정한 처벌을 받는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는 2,0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1. 광고 계획에 대한 조언 또는 광고매체에 대한 권고를 하는 자가 권고받은 광고매체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광고매체 지면의 특징 또는 판매가격에 대한 허위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본인 또는 그의 그룹이 재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고판매인을 위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지면의 매입을 권고하거나 매입을 하게하는 경우
2. 제20조에 정한 중개인인 위탁자 이외의 자로부터 보수 또는 이익금을 받는 경우
3. 제20조에 정한 판매인이 광고주의 중개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수 또는 이익금을 주는 경우
4. 광고계획에 대한 충고 또는 광고매체에 대한 권고를 하는 자가 광고판매인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이익금을 받는 경우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위반 행위의 경우, 법인은 형법 제121-2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선고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131-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동안 공개입찰의 참가를 배제당한다.

⑤가격및경쟁자유에관한대통령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은 동대통령령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1조 및 제52조의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대한 시행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①이 법률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광고회사는 광고지면 판매인으로 본다.

②제20조에 정한 대리인은 영업대리인과위탁자간의관계에관한법률(1991. 6. 25, 제91-593호) 제1조에 정한 영업대리인으로서 보지 아니한다.

③“광고지면의 매입”이라는 용어는 언론자유에관한법률(1881. 7. 29.)에 의하여 설치된 발행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 장의 규정은 중개기관의 장소에 관계없이 광고문이 프랑스기업을 위하여 판매되고 주로 프랑스영토에서 허용되는 때부터 적용된다.

제28조 이 편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5조제5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1993년

3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이 장에 정한 규정의 효력발생후 3년이 경과된 때 정부는 의회에 시행조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 3 장 상업적인 도시계획

제30조<sup>3)</sup> ①지역공동체 및 지방혼합경제회사에 적용하는 특별규정을 유보하고, 상업및가내공업기본법 제29조 및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계획을 실시할 때에 공공기관 또는 개인(personnes publiques ou privées)이 체결한 모든 계약서는 명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계약당 사자가 도지사 및 지역회계검사소에 이를 송부한다.

②허가받기 전에 체결되고 허가받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토지에 대한 감독 또는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도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를 송부한다.

③제1항에 정한 계약서의 송부는 계약을 체결한 후 2월이내에 또는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를 행한다.

④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sup>4)</sup> ①도상업시설위원회를 설치한다. 동위원회는 제29조 및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②도상업시설위원회(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d'équipement commercial)는 제1조,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원칙의 범위내에서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린다.

1. 관계된 고객의 지역에서 각종 사업을 위한 총괄적인 제의 및 신청
2. 제1호의 지역에 있어서 중간 및 대규모 면적에 시설물의 밀집 상태
3. 제1호에 정한 지역의 상업과 가내공업 조직 및 상이한 형태의 상업간 균형에 대한 계획의 잠재적인 효과
4. 각종 상업과 가내공업에 있어서 충분한 경쟁의 필요성

3) 상업및가내공업기본법(1973.12.27, 제73-1193호) 제29-2조의 개정

4) 상업및가내공업기본법 제28조의 개정

③도상업시설위원회는 도상업시설감시소의 보고를 참작하여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제32조<sup>5)</sup> ①도지사는 도상업시설위원회를 주재하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도상업시설위원회는 파리시 이외의 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한 7인으로 구성된다.

1. 설치된 지역의 시읍면장
2. 장소정리 및 개발 관계 업무를 주관하는 시읍면간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설치된 면(canton)의 의회 의원
3. 설치된 시읍면 이외에 인구가 가장 많은 2개 시읍면의 장
4. 관할 구역이 설치된 시읍면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그의 대리인
5. 관할 구역이 설치된 시읍면에 위치한 가내공업회의소 회장 또는 그의 대리인
6. 도소비자단체의 대표

③1. 도상업시설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소유하고 있는 이권(des intérêt)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역할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상업시설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든지 개인적·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 당사자의 일방을 대리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협의할 수 없다.

3. 도시설국장과 도경쟁·소비·사기행위처벌담당 국장은 회의에 참석한다.

4. 허가신청에 대한 예심은 정부로부터 업무분담을 받은 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④도상업시설위원회 위원의 임명조건 및 운영방법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다.

제33조<sup>6)</sup> 도상업시설위원회는 명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한다.

동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 각자가 행한 찬부표시 사항을 기재하고, 위

5) 상업및가내공업기본법 제30조의 개정

6) 상업및가내공업기본법 제31조의 개정

원장과 사무총장이 이에 서명한다.

제34조<sup>7)</sup> ①도상업시설위원회는 제29조에 정한 허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동결정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월의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동위원회의 위원은 허가결정을 내리기 1월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를 열람한다.

②도지사, 3인의 위원 또는 신청자의 제의로, 도상업시설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거나 조정을 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제33조에 정한 전국상업시설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동위원회는 제소가 있는경우 4월이내에 판결을 내린다.

③도상업시설위원회와 전국상업시설위원회는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허가하거나 거부한다.

④건축허가는 제2항에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되기 전 또는 제소한 경우 전국상업시설위원회에서 판결을 하기 전에 이를 부여하거나 부여하려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본 토지에 대한 신청서는 다시 도상업시설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수 없다.

제35조<sup>8)</sup> ①전국상업시설위원회를 설치한다. 동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3년 임기로 상무부의 보고서에 위거하여 정한 명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연임할 수 없다.

②전국상업시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다.

1. 국참사원 부원장이 지명한 국참사원의 심판관. 동심판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회계검사원 원장이 지명한 회계검사원의 검사관
3. 재무총감독국 국장이 지명한 감독국의 감독관
4. 토목심의회 부위원장이 지명한 시설총감독관
5. 분배·소비 또는 국토정비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상원 의장, 하원의장 및 상무부 장관이 각각 임명한 3인

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인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7) 상업및가내공업기본법 제32조의 개정

8) 상업및가내공업기본법 제33조의 개정



- ④ 전국상업시설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소유하고 있는 이권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역할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전국상업시설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든지 개인적·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당사자의 일방을 대리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협의할 수 없다.
- ⑥ 상무부 장관이 임명한 정부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소송기록에 대한 보고를 한다.
- ⑦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명조건 및 그 운영 방법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도상업목적도시계획위원회” 및 “전국상업목적도시계획위원회”는 “도상업시설위원회”와 “전국상업시설위원회”로 교체한다.

제37조 ① 이 법률의 공포일이전에 접수된 허가 신청서로서 도상업목적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신청서는 재접수의 대상이 된다. 상업및가내공업기본법 제32조제1항에 정한 3월의 기간은 도상업시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도지사령을 공포하기 전에 접수된 신청서를 위하여 그 도지사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률의 시행전에 상업목적도시계획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도지사, 신청자 및 상업목적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3인은 도상업시설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당시의 현행 법규의 정한 바에 따라, 신청자의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위원과 도지사의 경우 위원회의 소집일 또는 결정을 조정 한 후 2월이내에 전국상업시설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전국상업시설위원회는 이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제소된 사건 및 전국상업목적도시계획위원회가 동시행일 이전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상무부 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동위원회가 조사한 제소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다.

④ 상업및가내공업기본법 제32조제2항에 정한 4월의 기간은 위원회위원을 임명하는 명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전국상업시설위원회가 도상업목적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소한 사건을 판결하는 경우에는 도상업목적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당시의 현행 법규에 규정된 신청의 수리 및 허가증 교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공공사업의 위탁

### 제 1 절 총 칙

제38조 ①공법인에 대한 공공사업의 위탁은 위탁기관을 통하여,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몇가지 경쟁적인 제의를 가능하게 하는 광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공공단체는 직업과 재정보증 및 공공사업 수행의 계속성과 공공사업 수행에 있어서 이용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능력을 심사한 후 제의를 하는 것이 허용된 각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③공공단체는 공공사업 수행(les prestation)의 양적·질적인 특징 및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요금의 결정 조건을 정하고 참고자료를 각 지원자에게 송부한다.

④제1항의 제의는 위탁기관의 상급기관이 이를 자유로이 협상을 하며, 동 기관은 이러한 협상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39조 공화국의영토관리에관한기본법(1992. 2. 6, 제92-125호) 제52조는 삭제한다.

제40조 ①공공사업 위탁에 대한 협약은 위탁기간내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공공단체는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공공사업 수행에 따라 동기간을 정한다. 시설물이 수탁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우임 협약에 있어서는 협약의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투자의 종류와 금액을 고려하며, 이 경우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감가상각 기간(la durée normale d'amortissement)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공사업의 위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성실한 사업수행 또는 그 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위탁된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변경시킬 수 있고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협약의 잔여기간동안 강행할 수 없는 공사를 시행하여야만 되는 경우

③국가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탁을 동의한 경우 제2항의 기간 연장은 심의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공공사업의 위탁협약에는 수탁자가 위탁목적과 관계없는 직무수행 또는 보수지급에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없다.

⑤ 수탁자가 위탁자인 단체에 지급하는 수입세와 부과금의 액수 및 산정방법은 위탁협약에서 그 정당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⑥ 이 조의 시행방법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공공사업 위탁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이 기업을 위한 독점권을 설정한 경우
2. 공공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 2 절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의 연합체 및 그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규정

제42조 지역공동체와 그 연합체 및 공공기관의 심의회는 지방업무에 속하는 공공사업의 위탁원칙을 공표한다.

제43조 ① 공공사업의 위탁원칙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정한 바에 따라 제안 사항들을 광고·수집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제안사항을 넣은 봉투를 개봉한다.

1. 지역권, 코르시카지역공동체, 도, 인구 3,500명 이상인 시읍면 및 공공기관과 관계가 있는 경우, 공공사업위탁협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 기관장이나 그 대리인 및 심의회내에서 비례대표의 방식으로 선출된 위원 5인

2. 인구 3,500명 이하인 시읍면과 관계가 있는 경우, 시읍면장이나 그 대리인 및 시읍면의회가 비례대표의 방식으로 선출한 의원 3인

③ 정식 위원과 동수로 선출되는 대리인의 선출도 제2항에 정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한다.

④ 지역공동체의 회계관과 경쟁업무 담당부의 대리인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한다.

⑤ 협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 기관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제의를 한 기업체와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기업의 선정에 대하여 심의

회에 제소를 하며, 제의를 할 수 있는 기업의 명단, 기업의 제의내용 분석 및 지원자의 선정 이유와 계약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알리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회에 송부한다.

제44조 ①심의회는 제43조에 정한 위원회의 업무를 맡은 다음(après la saisine) 2월 이후에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 계약을 의결한다.

②심의회가 공포한 참고자료는 심의하기 15일이전에 위원회에 송부한다.

제45조 일정한 기업체와 직접 협상하는 절차의 채택(le recours a une procédure)은 공공단체가 어떠한 제의도 하지 아니하거나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46조 ①시읍면법 제L. 314-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L. 314-1조 ①지역 당국은 서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읍면·도·지역권의권리자유에관한법률(1982년 3월 2일 제82-213호)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정부대표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된 시읍면과 그 공공기관의 거래 및 공공사업 위탁협약서에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에 의하여 목록을 정한 서류 전체를 첨부한다.

②지역 당국은 낙찰자(titulaire du marché)또는 위탁을 받은 차에게 통보된 협약서에 표시를 하고, 송부 일자를 명시하여 송부되었음을 증명한다.

③지역 당국은 15일이내에 도의 정부대표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1항의 협약서 통보일을 알린다.》

②이 절의 규정은 지역공동체 연합체 및 그 지역공동체의 기타 공공기관에 준용된다.

제47조 ①이 법률 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서명하는 협약에 준용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공포 이전에 자격을 부여받은 기관이 수탁자를 교섭하고 그 대신에 수탁자가 사전에 연구·공사를 착수한 경우 준용되지 아니한다.

## 제 5 장 공개 시장

제48조 ①혼합경제회사가 자체 명의로 또는 공공기관을 위하여 공공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체결한 공사·연구 및 사업감독 계약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거래법이 정하는 광고와 경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사실 서민주택건설기관이 체결한 계약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거래법이 정하는 광고·경쟁 및 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sup>9)</sup>

③건축사업 또는 주택관리업을 행하는 혼합경제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거래법이 정하는 광고·경쟁 및 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sup>10)</sup>

## 제 6 장 공공사업의 위탁 및 공개시장에 대한 통칙

제49조 거래절차의투명화·질서및계약체결시광고와경쟁규칙준수에관한법률 (1991.1.3, 제91-3호)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①정부·지역공동체·공공기관·공공사업담당 혼합경제회사 및 지방혼합경제회사가 공공사업 위탁의 입찰과 협약을 준비·체결 또는 집행함에 있어서 규칙 준수와 공정 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사업위탁의 협약·거래에 대한 부처간조사단을 설치한다.》

《제2조 ①제1조의 조사는 수상 또는 경제재무장관의 요청에 의하거나 도·기관 및 그 감독하에 있는 혼합경제회사의 경우 공공사업 위탁의 입찰 또는 협약에 대한 조사결과, 다른 입찰 또는 협약에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는 때 각부 장관 또는 조사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신속하게 행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지역공동체, 그 공공기관 및 지방혼합경제회사가 체결한 공공사업 위탁의 협약 또는 입찰과 관계된 때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신속하게 행할 수 있다.》

《제7조 ①선거에 의하여 임명된 자, 제1조에 정한 지역공동체나 기관의 대표·행정관 또는 대리인 또는 그 자들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9) 건설주택법전 L. 제433-1조의 개정

10) 건설주택법전 L. 제481-4조의 개정

공공사업 위탁의 입찰 및 협약에 있어서 응찰자의 참여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얻게 하려고 한 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프랑 이상 20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사법경찰관 이외에 부처간거래조사단원은 이 조에 정한 위법행위를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제50조<sup>33</sup> ①공공사업의 위탁에 대한 공개입찰 및 협약의 체결시 광고와 경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행정법원의 장 또는 그 대표자에게 제소할 수 있다.

②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얻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자이며, 지역공동체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도의 정부대표이다.

③청구는 국가에서 체결한 거래 또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주공동체위원회가 공동체 법규에 의한 광고 및 경쟁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국가에 통보하였을 때 국가가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 7 장 부동산 거래

제51조<sup>34</sup> ①지방자치단체, 그 연합체와 공공기관, 양수인 또는 지방혼합경제회사가 사설기관에 건축부지 또는 건축권리를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되는 재산 또는 권리의 종류와 계획된 매각의 조건 및 서민주택공사와 혼합경제회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용자를 받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찰자의 입찰서류 접수장소,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간 및 구비하여야 하는 양식을 공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절대무효(nullité d'ordre public de la vente)가 된다. 공시는 명령으로 정한 기간이내에 한하여 공시일로부터 행할 수 있는 매각의 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 지방및고등행정법원법 제L.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

12) 시읍면법 L.제311-8조의 개정

②지방혼합경제회사의 일부 자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설 기관·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건축할 부동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려고 하는 지방혼합경제회사는 주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는 양도하기 전에 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③제2항의 통보 사실에 대한 보고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심의기구의 다음 회의 의사일정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시읍면장, 지역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혼합경제회사 심의회 위원장은 관계단체 또는 기관의 심의기구에 선정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무효소송 제기기간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확인증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⑤제1항에 정한 광고의 방법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52조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발생된 권리를 유상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업자(un professionnel de l'immobilier)가 이를 행하는 경우 절대 무효행위가 된다.

제53조 (헌법위원회의 결정(1993.1.20, 제92-316호)에 의하여 헌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규정)

제54조 (헌법위원회의 결정(1993.1.20, 제92-316호)에 의하여 헌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규정)

제55조 ①협정의정비지역에 건설할 건물의 이용자를 위하여 공적인 설비비용만은 건축주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sup>13)</sup>

②시읍면의회가 합동정비계획을 승인한 시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관계 지역에 건축할 건물의 이용자를 위하여 공적인 설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할 수 있다.<sup>14)</sup>

제56조 ①도시계획법전 L. 제332-6조제2호에 정한 공적인 설비비용의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sup>15)</sup>

13) 도시계획법전 L. 제311-4-1조의 신설

14) 도시계획법전 L. 제332-9조제1항의 개정

15) 도시계획법전 L. 제332-6-1조제2호(라)의 개정

2. (라) 건축공사에서 건축할 건물의 이용자를 위하여 국영기업체가 양도  
· 임대 또는 개발한 것으로서 상공업관계 공공사업의 설비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분담금(la participation)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분할허가, 토지정리허가 또는 농지통합 계획을 승  
인하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분양업자, 여가를 위하여 일시 체  
류하는 주거용 토지(des terrains destinés l'accueil d'habitations  
légères de loisir)의 정리업자 및 도시지역토지조합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sup>16)</sup>

4. 제L. 332-9조에 정한 분담금 및 제L. 332-6-1조제2호(가)(나)(다)(라)  
및 제3호에 정한 협력금 명목의 고정 분담금

제57조 도시계획법전 제3권제3편제2장 제L. 332-28조, 제L. 332-29조 및 제  
L332-3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L. 332-28조 제L. 332-6-1조제2호 및 제L. 332-9조에 정한 분담금은 경  
우에 따라, 건축허가, 분양허가, 여가를 위하여 일시 체류하는 주거용 토  
지의 정리허가를 받거나 농지통합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 내려진 때에  
이를 청구한다. 동허가 또는 결정은 효력발생행위가 된다.》

《제L. 332-29조 제L. 332-28조에 정한 허가 또는 결정에 의하여 청구된 분  
담금 및 협의정비지역의 실시 범위내에서 요구되는 분담금은 시읍면의 일  
반인 열람이 가능한 기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이 조의 시행방법은 필요  
한 범위내에서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다.》

《제L. 332-30조 ①제L. 311-4-1조 및 제L. 332-6조에 위반하여 징수하거나  
부과된 각종 세금과 분담금은 징수하거나 부과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본  
다. 지급된 금액 또는 제공된 사업수행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서  
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청구소송 제기기간은 최종납부일 또는  
부당하게 요구한 비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L. 332-28조에 정한 허가의 대상이 되거나 협의정비지역에 위치한 재  
산을 상속받은 자도 제1항에 정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  
속받은 자의 경우, 반환청구소송 제기기간은 제L. 332-29조에 정한 기록부  
로서 기재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16) 도시계획법전 L. 제332-12조제2항제4호의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금액은 5퍼센트의 법정이자  
가산된다.》

제58조<sup>17)</sup> ④기초 토지가 지역 정비업자의 동의를 받은 양도·임대·사용허가  
또는 그 지역의 매각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협력을 약정하는 협약의 대상  
이 되는 경우 협의정비지역에 건설된 건물은 이 조에 정한 분담금을 면제  
받는다.

제59조 건설주택법전 L. 제423-1-1조, L. 제423-1-2조, L. 제423-1-3조 및 L.  
제423-1-4조는 삭제한다.

제60조<sup>18)</sup> ①제L. 422-2조, 제L. 422-3조 및 제L. 422-13조에 정한 서민주택회사  
주식의 최고 양도가격은 1.5퍼센트 인상된 저축금의 소유자에게 당해 년  
도 12월 31일까지 정한 이율로 산정된 이자를 20년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매년 가산하고 동기간동안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동주식의 액면가액으  
로 이를 한정한다.

②부동산담보대부금융회사(les sociétés anonymes de crédit immobilier)  
주식의 최고 양도가격은 당해 년도 12월 31일에 발행된 공채의 수익율의  
90퍼센트에 상당하는 이자를 20년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매년 가산하고 동  
기간동안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동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이를 한정한다.

③주택담당장관은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인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  
(1993.1.29, 제93-122호)의 공포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  
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제한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  
는 것이 사취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는 주주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서민주택  
심의회 상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④이 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주식의 양도행위는 절대 무효행위가 된다.

제61조<sup>19)</sup> ①상사회사법(1966년 7월 24일 제66-537호)제178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민간서민주택건설기구에 있어서 준비금, 이익금 또는 발행초과액  
(primes d'émission)의 자본전입(incorporation)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는

17) 도시계획법전 L. 제332-9조제4항의 개정

18) 건설주택법전 L. 제423-4조의 개정

19) 건설주택법전 L. 제423-5조의 개정

주택담당장관이 중앙서민주택심의회 상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예외사항을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정한 금지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하여 정한 적법한 최소한의 증액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상사회사법 제209조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서민주택건설기구는 자본을 상각(l'amointrissement)시킬 수 없다.

④민간서민주택건설기구가 상사회사법 제217조제2항에 정한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매수가격은 제L. 42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민간서민주택건설기구가 주식의 액면가격을 할인시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주주에게 환급되는 금액은 제L. 423-4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감소된 자본금의 할당액에 따라 산정된다.

제62조<sup>20</sup> ①건축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관이 고용주의 건축분담금 명목으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부동산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에 대한 최고 양도가격은 서민주택공사의 지위를 가지는 부동산회사간의 지분 또는 주식을 제외하고, 순수한 회사의 지위에서의 지분 또는 주식 가액이나 50퍼센트 가산된 기명의 지분 또는 주식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주택담당장관은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인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지분 또는 주식을 매입한 회사의 주주로서 동지분이나 주식을 그러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은 그에 대하여 사취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l'Agence nationale pour la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 l'effort de construction)의 자문을 거친 후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③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분 또는 주식의 양도행위는 절대무효행위가 된다.

제63조<sup>21</sup> ①제L. 313-1-2조에 정한 부동산회사의 정관에는 명령으로 정한 형

20) 건설주택법전 L. 제313-1-2조의 개정

21) 건설주택법전 L. 제313-1-3조의 개정

식에 부합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이 회사의 재산에 대한 사용 및 양도 규칙은 동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회사는 부패방지및경제생활과공적인절차의투명화에관한법률의 공포 이전에 설립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식의 조항을 두는 명령의 공포 후 12월이내에 동형식에 부합하는 정관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주주 또는 사원 총회가 부여된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제1항의 부합성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 부합되는 초안은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용청에 의하여 판결권이 있는 상사법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부여된 기간내에 제1항에 정한 조항에 부합하는 정관을 고의로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동산회사의 사장·전무 또는 이사에게는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부동산회사를 어떠한 이유로도 5년 동안 경영·관할 또는 관리하고 회사의 직인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64조 ①제L. 313-7조 및 제L. 313-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L. 313-7조제1항에 정한 직업단체 이외의 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기관에 준용된다.

②제L. 313-13조제1항에 정한 시정조치를 취할 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기관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 주택담당장관은 8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의 자문을 거친 후 동기관의 징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주택담당관은 제2항에 정한 징수기관의 제의에 의하거나 자문을 거친 후 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명의개서(transfert)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을 임명한 단체 또는 기관에 건축분담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회수·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자산과 부채를 이전한다.

④이 조에 정한 기관이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관이 관계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한 경우 동기관의 감독 부처는 주택담당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감독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직권으로 사표를 제출한 직원을 공시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서민 주택공사 또는 혼합경제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2) 건설주택법전 L. 제311-7-1조의개정

⑥이 조의 시행조건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다.

제65조<sup>24</sup> ①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는 제L.313-7조에 정한 단체 및 제L.313-7-1조제1항에 정한 기관이 착수한 공사의 만족한 완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공동부령에 의하여 조정규칙을 정한 보증기금을 관리한다.

②보증기금은 제1항의 단체가 징수하고 관계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한도의 범위내에서 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가 이사회에서 액수를 정한 기금에 의거하여 매년 징수하는 금액 및 그 금액의 투자로 얻은 재정적 수익에 의하여 조달된다.

제66조<sup>24</sup> 주택담당장관은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 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의 제의에 의하거나 자문을 거친 후 단체를 해산하고, 부령에 의하여 청산인을 임명한다.

제67조<sup>24</sup> 건축분담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회수·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황보고서는 단체의 해산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제L.313-7조에 정한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주택담당장관이 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의 자문을 거친 후 지명한 단체에 이를 전달한다.

제68조<sup>24</sup> ①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는 주택담당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분담금을 징수하는 기관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기관을 통하여 건축분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보조를 받아 행하는 공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부·서류·참고자료 및 증명서를 열람한다.

②제8항의 규정은 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서민주택공사 및 혼합경제회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9조<sup>24</sup> ①기금 사용에 있어서 중대한 부정행위, 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어서 의무태만 또는 승인조건의 불이행의 경

23) 건설주택법전 L. 제313-10조의 개정

24) 건설주택법전 L. 제313-14조의 개정

25) 건설주택법전 L. 제313-15조제3항의 개정

26) 건설주택법전 L. 제313-7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

27) 건설주택법전 L. 제313-1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우 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는 관계 단체에 일정한 기간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②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는 주택담당장관에게 관계 단체의 승인 철회를 제의하거나 부정행위의 중대성 및 관계 기관의 재정상태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벌금을 동단체에 과하도록 제의할 수 있다. 동 벌금은 10,000,000프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세와 관련된 세금과 같이 이를 징수한다. 이 수익금은 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의 보증기금에 입금된다. 관계 단체에 대하여서는 벌금을 과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관의 벌금 결정에 대하여는 국참사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70조<sup>28)</sup> 건설주택법전 L. 제313-16조, L. 제423-10조 및 L. 제423-11조에 정한 금지사항은 제L313-7조에 정한 단체의 관리인과 직원 및 국가고용주건축분담금징수사무소의 관리인과 직원에게 준용된다.

제71조<sup>29)</sup> 건축분담금징수기관장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다음 각호에 정한 바와 같이 행한 경우 5년의 금고 및 1,0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1. 기관의 재산 또는 예산을 동기관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한다.
2. 소유한 권리 또는 임의로 행하는 표결권을 기관의 목적에 반하여 행사한다.

## 제8장 범죄조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금의 세탁

제72조 금융기관의마약거래수익금세탁방지협력에관한법률(1990. 7. 12, 제 90-614호) 제3조 및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 제1조에 정한 금융기관은 이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제5조에 정한 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장부에 기재된 자금이 마약거래 또는 범죄조직 활동에 의하여 취득된

28) 건설주택법전 L. 제313-16조의 개정

29) 건설주택법전 L. 제313-16-1조의 신설

것으로 보이는 경우 동자금

2. 자금이 마약거래 또는 범죄조직 활동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동자금과 관련된 거래>>

<<제5조 경제재무부 산하에 있는 1개 기관이 제3조에 정한 신고를 받는다. 동기관은 제24조에 정한 명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출처 또는 거래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에 의하여 마약거래 또는 범죄조직 활동에 속하는 행위로 입증된 즉시 관세법 제415조에 정한 위반행위의 수사·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세관에 제의를 한 사실을 명시하면서 지방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한다.>>

제73조<sup>30)</sup>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마약거래수익금세탁방지협력에관한법률 제5조에 정한 기관이 신고서의 접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편 지방자치단체

#### 제1장 절차의 투명화

제74조 ①시읍면 및 시읍면의 조합은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법규에서 강제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행정기관 성격의 공익기관을 직접 운영 할 수 있다.<sup>31)</sup>

②행정기관 성격의 공익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영기업체에 적용하기 위한 특별방법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다.<sup>32)</sup>

③관계 시읍면에 의하여 조직된 조합이 상공업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서만 설립된 경우 시읍면은 조합의 관리를 국영기업체의 관리와 같이 행하도

30) 금융기관의마약거래수익금세탁방지협력에관한법률 제6-1조의 신설

31) 시읍면법 L. 제323-1조제3항의 개정

32) 시읍면법 L. 제323-9조제3항의 개정

록 요구할 수 있다.<sup>33)</sup>

④행정기관 성격의 공익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영기업체에 적용하기 위한 특별방법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다.<sup>34)</sup>

⑤도, 지역권 및 인구 10만 이상인 시읍면의 심의회에 있어서 선출된 위원단의 운영은 의결할 때 선출된 위원의 수당제도에 관한 결정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의 시행방법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다.<sup>35)</sup>

제75조<sup>36)</sup> ①지역회계검사소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51조, 제52조 및 제83조의 정한 바에 따라 지역공동체와 그 공공기관의 예산감사에 협력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회의가 개최된 즉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회계검사소가 표명한 견해 및 정부대표가 행한 결정 사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③지역회계검사소가 지역공동체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사일정서류에 이를 기재하고, 심의회의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서를 송부할 때 이를 첨부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회의가 개최된 즉시 지역회계검사소의 의견을 통보받는다.

제76조<sup>37)</sup> ①지방혼합경제회사가 지역공동체 또는 연합체를 위하여 공권력의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 동회사는 매년 특권의 행사 조건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공동체 또는 연합체의 심의기구에 제출하고 도의 정부대표에게 송부한다.

②지방혼합경제회사가 상사회사의 차분에 참여하는 것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는 주주인 지역공동체 및 그 연합체의 사

33) 시읍면법 L. 제323-12조제2항의 개정

34) 시읍면법 L. 제323-13조제3항의 개정

35) 공화국영토관리에관한기본법(1992. 2. 6, 제92-125호) 제432-1조의 개정

36) 시읍면·도및지역권의권리자유에관한법률(1982. 3. 2, 제82-213호)제87조 제11항, 제12항, 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

37) 지방혼합경제회사에관한법률(1983. 7. 7, 제83-597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7항의 개정

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7조<sup>38)</sup>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동 판결에 의하여 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동벌금은 법원의 판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4월이내에 이를 우편으로 송금한다. 동기간이내에 우편송금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의 정부대표 또는 감독기관이 직권으로 우편송금을 하도록 한다.

2. 도의 정부대표 또는 감독기관은 예산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촉구한다. 공동체 또는 기관의 심의기구가 필요한 자금을 염출 또는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도의 정부대표 또는 감독기관은 그 염출 또는 조성에 대비하고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우편 송금을 한다.

제78조 ① 다음 각호의 자는 공법인에의한행정상의강제및판결의집행에관한 법률 제1조제2항의 규정 또는 국가와공동체에관한업무집행의과오에대한 처벌및예산징계법원의설치를위한법률(1948. 9. 25, 제48-1484호) 제6-1조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시읍면·도및지역권의권리자유에관한법률 제1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 또는 지역권의설치·조직에관한법률(1972. 7. 5, 제72-619호)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순서에 관한 책임을 진 경우와 국가와공동체에관한업무집행의과오에대한처벌및예산징계법원의설치를위한법률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무 수행에 있어서 행한 범법 행위에 따라 예산재정징계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1. 지역권의회 의장 및 지역권의설치·조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호에 정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관계가 있는 때 지역권의회의 부의장과 기타 구성원
2. 코르시카도의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코르시카지역공동체에대한규정을정하는법률(1991. 5. 13, 제91-428호) 제33조제5항에 정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관계된 때 집행위원회 위원
3. 도의회 의장 및 시읍면·도및지역권의권리자유에관한법률 제31조에 정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관계된 때 도의회 부의장과 기타 구성원
4. 시읍면장 및 시읍면법 제L.122-11조, 제L.122-13조에 정한 규정의 범

38) 공법인에의한행정상의강제및판결의집행에관한법률(1980. 7. 16, 제80-539호) 제1조제2항의 개정



위내에서 관계가 있는 때 부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 기타 구성원

5. 지역공동체의 연합체 또는 혼성조합의 선출된 의장, 및 의장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가 있는 경우 연합체 또는 혼성조합 심의기구의 부의장 기타 구성원

②제1항에 정한 자에 대하여 관하는 최고 벌금액은 5,000프랑까지로 정하거나, 위반행위를 행한 날까지 지급된 연간 직무수당액수가 5,000프랑을 초과한 경우 동액수까지로 할 수 있다.

제79조 ①이 법률에 의하여 회계검사원의 법관, 특별고문 및 보고담당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를 방각하여 관계없이 방해하는 행위는 1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검사원의 검찰관은 소추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sup>39)</sup>

②이 법률에 의하여 지역회계검사소의 법관과 보고담당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를 방각하여 관계없이 방해하는 행위는 1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회계검사소의 검찰관은 소추하기 위하여 관할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sup>40)</sup>

제80조 ①회계검사원의 압류·보고 및 관찰은 요청에 의하여 관계자의 신문을 거친 후 이를 결정한다.<sup>41)</sup>

②지역권회계검사소의 판결·보고 및 관찰은 요청에 의하여 관계자의 신문을 거친 후 이를 결정한다.<sup>42)</sup>

제81조<sup>43)</sup> ①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명령에 의하여 액수를 정한 보조금을 매년 받는 협회는 대차대조표, 성과보고서 및 명령에 의하여 작성 방법을 명시한 첨부서류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회는 상사회사법(1966.7.24, 제66-537호)제219조에 정한 바

39) 회계검사원에관한법률(1967.6.22, 제67-483호) 제9조제4항의 개정

40) 회계검사원에관한법률의개정및지역회계검사소에관한법률(1982.7.10, 제82-594호)제5조제7항의 개정

41) 회계검사원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개정

42) 회계검사원에관한법률의개정및지역회계검사소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개정

43) 기업의어려움에방및타협적인조정에관한법률(1984.3.1, 제84-148호) 제29-1조의 신설

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1인 이상의 감사와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정한 협회의 단체조직기구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회 회의에 참석한다.

⑤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속성이 위태롭게 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감사는 특별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사는 협회 위원에게 동보고서를 송부하거나 다음 회의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장 통제의 현대화

제82조<sup>44</sup> 공권력의 특권 행사와 관련된 결정으로서 지방혼합경제회사가 시읍면 또는 시읍면 협력기관을 위하여 내린 결정은 이 조 제1항에 정한 규정의 규제를 받는다.

제83조 (헌법위원회의 결정(1993. 1. 20, 제92-316호)에 의하여 헌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규정)

제84조<sup>45</sup> 시읍면간상호협력도위원회는 이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제의를 고려하고, 부합되는 경우 동제의에 따라 도의 시읍면간 상호협력계획을 제의한다. 동계획에는 시읍면공동체, 도시공동체, 시읍면 지구 또는 조합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제의가 포함된다.

제85조<sup>46</sup> 시읍면공동체는 시읍면의 공간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대책임 지역내에서 시읍면을 결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공동체의 이익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시읍면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다.

1. 공간의 정비
2.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경제개발사업

제86조 (헌법위원회의 결정(1993. 1. 20, 제92-316호)에 의하여 헌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규정)

44) 시읍면·도및지역권의권리자유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제7호의 개정

45) 공화국영토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의 개정

46) 시읍면법 L. 제67-3조제1항의 개정

제87조 ①행정기관은 국가공직에관한법률(1984.1.11, 제84-16호) 제72조, 지역공직에관한법률(1984.1.26, 제84-53호) 제95조 및 의료공직에관한법률(1986.1.9, 제86-33호) 제90조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면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직하기 이전에 행정기관 이외의 곳에서 수행하고자 한 업무 이전의 업무와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평가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②이 법률은 국가의 법률로서 시행된다.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CHEMISTRY  
5408 S. UNIVERSITY AVENUE  
CHICAGO, ILLINOIS 60637  
TEL: 773-936-3700  
WWW.CHEM.UCHICAGO.EDU

懸案分析 93-9 프랑스의 政治改革關聯 法制

---

1993年 10月 7日 印刷

1993年 10月 11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 컴퓨터 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2,000원

